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

#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2019년 10월 30일 (수) 오후 3시-5시30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B1 LG컨벤션홀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열린터 25주년 기념 포럼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 목차

### 사회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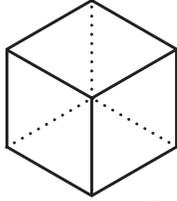
- 05 발표 1. 모든 성폭력피해여성에게 열린 집을 열다  
열림터 25년의 역사와 현재, 정정희(열림터)
- 23 발표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개념을 재사유하기, 류수민(열림터)
- 42 발표 3. 열림터 퇴소자 지원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 전혜영(열림터)

#### 패널토론

- 59 토론 1. 송은주(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퉁잇돌’ 원장)
- 65 토론 2. 난다(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 곁에서 동행하는 ‘몽실’ 프로젝트팀)
- 71 토론 3. 인정숙(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 부록

- 75 부록 1. 열림터 연혁
- 77 부록 2. 열림터가 발간한 자료집과 단행본
- 78 부록 3. 그동안 열림터와 함께 한 사람들
- 79 부록 4. 열림터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 발제

**발표 1.** 모든 성폭력피해여성에게 열린 집을 열다

열림터 25년의 역사와 현재, 정정희(열림터)

**발표 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개념을 재사유하기,

류수민(열림터)

**발표 3.** 열림터 퇴소자 지원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

전혜영(열림터)





발표 1.



## 모든 성폭력피해여성에게 열린 집을 열다 '열림터' 25년의 역사와 현재

정정희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원장

### 1. 들어가며

열림터는 1994년 9월에 반성폭력운동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1991년 개소 이후 2년 동안 지원한 상담사례를 연구한 결과, 그간의 사회 통념과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친족 성폭력 피해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대책이 필요함을 알렸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1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터의 의미를 담은 열림터가 문을 열었다.

199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3주년 기념행사로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음악회]를 열었고 그때의 후원금으로 열림터라는 이름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 '집'은 이후 친족 성폭력 피해자 생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로 인해 가족과 주변으로부터 2차 피해를 본 이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쉼터의 존재는 지속하는 성폭력 피해를 벗어나 살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며, 피해자임에도 자책과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들이 위로받고 지지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확인받는 공간이다. 가해자들에게는 가족만의 비밀로 하자며 피해자를 회유하고 협박하던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외부로 드러나는 순간이며 법의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 더는 가해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경고의 의미가 있

다. 비가해 가족들에게는 가해자의 협박, 경제적인 어려움, 주변의 시선을 살피느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묵인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하도록 하게 한다.

사회적으로는 전체 성폭력 상담의 평균 13%<sup>1</sup>에 달하고 있는 친족성폭력이 특별한 누군가에게 생기는 일이 아니며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들의 실태를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 글은 개소 25주년을 맞은 열림터의 지난 활동내용을 돌아보며 열림터의 설립 목표가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가 닿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 앞으로 열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 2. 열림터 생활인의 구성

2018년 현재까지 열림터 입소 건수는 총 411건이다. 2009년까지 입소기간 제한으로 재입소를 한 경우가 69건이며 가족동반자가 32명이다. 이를 제외한 입소자는 310명이라 볼 수 있다. <표1>에서 보듯이 동반가족을 제외한 전체 입소자 중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228명으로 73.5%이며, 미성년자나 성인의 동반 가족으로 입소한 사람은 32명이다. 친족 피해자는 232명으로 전체의 74.8%이며,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84명이 친족에 의한 피해이다(19세 미만 총인원 대비 친족에 의한 피해: 80.7%). 2010년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 특별쉼터가 생긴 이후 청소년의 입소율은 줄었지만, 열림터에서는 여전히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 25세 미만의 청년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러 명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53명으로 전체의 17.1%에 이른다.

< 표 1 > 열림터 생활인의 구성(1994년 ~ 2018년)

총인원*	19세 미만	19세 이상	기타(동반가족)
342	228	82	32

\* 1994년부터 2018년까지 총 지원 건수는 411건이며, 그 중 재입소는 69건임. (단위: 명)

1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통계 자료 중 (2010년-2018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유형)

< 표 2 > 가해자와의 관계\* (1994년 ~ 2018년)

총인원** (310, 100%)	친족 (232, 74.8%)		지인 (61, 19.7%)				모르는 사람 (7, 2.3%)	미상 (10, 3.2%)
	친·의부	친인척	모의 동거남	데이트	직장	기타		
19세 미만 (228, 73.5%)	142	42	6	5	1	27	3	2
19세 이상 (82, 26.5%)	37	11	1	8	4	9	4	8
총계	179	53	7	13	5	36	7	10

\*중복피해의 경우 대표피해만 집계함.

(단위 : 명, 총인원 대비 %)

\*\*이 표에서는 재입소인과 동반가족을 제외한 인원만 포함함.

< 표 3 > 입소 기간 (1994년 ~ 2008년)

총인원	30일 이하	30일 초과 180일 이하	180일 초과 365일 이하	365일 초과 730일 이하	730일 초과 1095일 이하	1096일 이상
342	86	155	48	46	4	3

### 3. 열림터 운영의 원칙

열림터 생활인의 특성은 입소의 이유만 다를 뿐 각각 살아온 역사와 환경, 개인적인 성향까지 다 다르다. 각각의 다른 요구들을 존중하며 상황과 특성에 맞는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열림터는 개소 때부터 여성주의 쉼터를 지향해왔는데, 특히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피해자를 피해생존자로 명명하기 시작하면서 고통속에서도 강하게 살아남은 그 힘을 보다 건강한 에너지로 바꾸어가는 주체로서의 이미지로 강조해왔다. 자신의 피해가 불평등과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식하며 부당한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한다.”<sup>2</sup>고 밝혔다.

이런 운영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열림터는 생활인과 활동가가 함께 이 원칙을 공유하며 생활하고 있다. 새로운 생활인이 들어오면 담당자를 정하고 지원 방향과 방법을 논의한다. 모든 지원 과정에서 생활인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퇴소자 지원을 위

2 조중신(2004), “열림터 10년간 지원현황과 과제”,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열림터 개소 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2004. 10. 6),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p7.

한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상담, 법률지원, 자원 연계, 주거연계, 정기모임 등을 진행하고 있다.

#### 4. 주요활동

생활 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학교지원, 직업·자립 지원 활동은 당연한 보호시설의 기본적인 업무이다. 열림터에서는 이 모든 지원 활동에서 생활인과 활동가, 생활인과 생활인 간의 관계를 평등하게 가지며, 활동가는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고 해결의 힘은 바로 생활인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의 목표는 생활인들이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여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① 생활인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개소 초기에는 집단상담을 중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며 이후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가, 운동, 공예작업, 서예, 분노 조절프로그램,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진행했다. 현재는 생활인들이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심신을 회복하고 자립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치유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인권 교육, 자기방어 훈련, 즉흥 연극, 치유의 글쓰기, 비폭력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립을 위한 과정으로는 진로 탐색과 직업 탐방 체험, 생활경제 교육하고 있다.

<표3> 열림터의 유형별 프로그램의 목표 (2019년)

	목표와 내용
성 인권 교육	지속적인 성 인권 교육을 통해 생활인들이 성폭력 피해생존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위기상황 대처능력을 향상을 위해, 반성 폭력 운동의 역사, 우리 사회의 성문화, 여성주의 이해, 성폭력탐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프로그램
자기방어훈련	성폭력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신체적/심리적 훈련을 통해 기초체력을 기르며 자신감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즉흥 연극	자기감정과 경험을 연극을 통해 왜 화하여 자기 이해 및 타인과의 소통방법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립교육	진로 탐색, 직업 탐방 체험, 생활경제교육 프로그램

##### ② 활동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설의 운영과 생활인 지원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성폭력 운동의 현장과 멀어지게 되고 성폭력 상담의 변화 경향을 감지하기 어렵다. 시설뿐 아니라 반성폭력 운동에 관한 관심을 지



속해서 가지며 생활인 지원의 역량을 키우고 그 내용 또한 생활인들과 공유하고 있다.

열림터 생활인의 특성과 변화에 맞추어 활동가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가 교육하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및 트라우마의 이해, 정신장애 생활인 지원 및 약물 처방 이해, 자살 예방 교육,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경제교육을 하고 있다.

최근 자해 시도, 자살 충동을 호소하고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인 생활인이 다수인 상황을 인식하고 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이해와 대처, 적절한 지원 방법을 찾기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 ③ 친족 성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생활인의 다수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 특성을 살려 설립 초기부터 친족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다. 1995년 열림터 운영위원들이 '친족성폭력연구회'를 구성하여 친족 성폭력의 특성과 지원 방법들을 연구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자료들은 이후에 열림터에서 생활인들을 지원하는데, 기본 지침으로서 중요하게 쓰였다. 또한, 1997년에는 『아주 특별한 용기』 번역본을 발간하여 피해생존자 지원에 참고로 활용하고 있다. 2000년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설명서」, 2004년 「친족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매뉴얼」, 2007년 「친족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등의 자료집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2012년 열림터 20주년 기념사업으로, 16명의 열림터 생활인을 직접 인터뷰하여 열림터 생활, 수사와 재판과정, 자립, 후유증, 어머니, 가해자 등의 쟁점을 다룬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단행본을 발간하고 북 콘서트를 진행하였다. 2013년에는 '친족 성폭력 이야기'를 온라인매체에 연재하였다.

### ④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활동

열림터는 2010년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시설권역의 회원단체로 연대 활동을 해 왔다. 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은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목표는 같지만, 그 특성이나 지원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140여 개의 회원단체 중에서 보호시설은 17개에 불과하여 시설의 당면과제 등이 전성협 회의에서 합의안을 마련하거나 논의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시설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된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폭력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지원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니 성폭력상담소와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논의 끝에 시설 분리를 결정하게 되었고, 2011년 전성협 총회에서 분리안이 통과되어 2011년 4월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시협')가 발족하였다. 이후 전국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간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열림터에서도 연간 4회의 전시협 임원회의, 정책토론회, 대표단 활동, 시설 활동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전시협 정책토론회에서는 시설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정책제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열림터는 개소 초기부터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전시협의 다른 회원단체들과 논의하였다. 이렇게 합의된 의견은 여성가족부에 의견서 제출, 담당 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여성가족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 5. 제도화 과정에서 열림터의 고민과 대응 내용

설립 초기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지원 규정이 없을 때 열림터에서는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체계적인 지원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부터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운영지침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점차 초기의 문제들이 개선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 시설의 부족, 시설생활인 지원 관련 문제와 종사자 처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쉼터는 31개소로 늘어나 시설 부족 현상은 해소되었고, 2019년에는 1인의 상담원 증원으로 시설마다 총 5명의 인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해졌다.

반면 연간 2회 이상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게 되었으며 점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중 직접서비스 지원을 하는 말단 부서 같은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더욱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보조금의 지급신청, 지급, 정산 등 회계 업무, 종사자 인사업무, 통계관리업무 등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라고 규정된 정부의 업무 전자화 지침은 생활인의 안전과 개인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를 쟁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이용 범위의 제한

2007년 전자정부 시대를 표방하면서 정부의 부처별 문서 보고를 새올행정시스템이란 체계 안에 입력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었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계획된 정책이었다. 그동안에도 시설에서는 입소와 퇴소 보고, 회계 보고 등 연 1회 운영실적 보고를 했는데 그 문서작업을 전자시스템에서 정해진 대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지원의 많은 영역이 지침으로 규정되어 시설 운영이 안정



되었으며 지역 간의 차이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입소자 정보는 물론 종사자들의 혈액형, 신장, 배우자의 직업까지 입력하도록 하는 것에 각 시설에서는 시스템 전산망 입력에 강력히 반대하였다. 여성폭력피해자들의 인권과 정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어느 사회복지시설보다 한층 더 예민한 감수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료, 생계, 생활, 프로그램 등 모든 영역에서 생활인들의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다.<sup>3</sup>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회의가 결성되었고,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행정시스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의견서 회람 과정에서 반대와 찬성의 견해차가 생겨 결국 최종적인 의견서 제출에는 실패했다. 이용시설인 성폭력상담소와 달리 시설의 입장에서는 제도화 시책에 반대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의 우려를 표하면서 회계 시스템에 입력하는 조건부 찬성의 의견이 있었다. 혹여 정부 시책에 반대해서 운영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거나 연기되기만 해도 시설의 생활인 지원에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자체적으로 재정 부담을 책임질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은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생활인에게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011년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이하 사복시) 입력의 범위를 제한하여 시설 정보, 입퇴소보고, 입퇴사보고, 운영비, 생계비 신청 등이 입력, 관리되고 있다. 이후 2016년 국고보조금 중복 수급방지를 위해 모든 복지시설은 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국통망)에 입력하고 거절하면 운영비 지원을 삭감한다는 지침이 있었다. 그러나 국통망에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상당했기에 입소한 생활인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이에 상담소와 다른 여성폭력피해자보호기관들이 연대하여 여성폭력시설이용자는 일반수급대상이 아니므로 국통망에 입력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가부의 모든 시설은 중복수급 등과 연관성이 없고 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모든 시설을 국통망 입력 의무에서 전면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여성폭력피해지원단체가 모여 4 차례의 대응 회의와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과 면담, 여성가족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통한 결과, 사복시를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통망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2016년 국가보조금통합관리망 1-4차 대응회의록 참조)

## ② 시설전산관리번호제도 실시

초기에 시설에 입소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구청에 입소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로 인

---

3 조주은(20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거하여 폭력피해자의 정보가 집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문의견" 참조.

한 위치 노출로 피해자를 찾아 가해자가 시설까지 찾아 온 적도 있다. 시설생활인과 시설의 비밀 보호는 누구나 지켜야 할 규칙이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신변 노출 사고도 발생했다. 한 생활인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제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있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라며 걱정을 하기도 했다. 다행히 2011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시설관리번호제가 시행되면서 이런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다. 이 번호 사용으로 생활인이 가해자나 비가 해 가족의 원치 않는 접근을 막고, 퇴소 후에 시설 생활 경력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 전산 관리번호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반면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요구되는 희망키움통장 개설<sup>4</sup>은 불가능하다.

또한, 전산관리번호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에서 3번째 자리는 0 혹은 1의 숫자만 들어가야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번호는 다른 숫자가 표기되고 있다. 생활인들은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마다 숫자의 오기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설생활인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생활인들은 전산관리번호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

### ③ 시설 입소자의 수급 자격인정

시설에 입소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의료보호와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소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열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은 어느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와는 확연히 다르며 경제력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수급의 자격을 따지면서 생계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 목적과도 어긋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열림터와 전시협의 제안으로 현재는 비수급자인 경우에는 생계비 지원을 여성가족부를 통해 따로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미 수급자이던 생활인이 시설수급자로 자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은 전 거주지에 확인하고 전 거주지 담당자는 시설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관련 업무의 담당자에게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지만, 좁은 지역의 특성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알려질 우려가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높아,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 ④ 심리치료비 지원 시행

열림터 개소 초기에 의료비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 열림터 생활인들은 활동가의

---

4 탈수급을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장려금을 더하여 지급하는 제도.



개인적인 연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생활인 중에는 정신과 치료와 약 처방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열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였다. 2001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지원되기 시작했지만 간단한 의료지원만 받을 수 있을 정도였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심리치료까지 지원하지 못했다. 2004년부터는 전문가의 심리치료 상담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심리상담전문가 연계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는 전문가의 부족뿐 아니라 치료비가 후급으로 정산되어 늦으면 2~3개월 치료비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 ⑤ 학교장 특별추천 전학 제도의 시행

열림터 초기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생활인들의 주소지 이전도 할 수 없고 보호자의 동의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전학 지원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전학할 때마다 교육청에 가서 설명하고 배정받은 학교에 가면 전학담당교사, 교감, 생활부장, 담임교사를 면담하고 여느 보호자와 다름없이 학교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2011년부터 학교장추천특별전형<sup>5)</sup>이 실시되면서 현재는 시설 입소확인서만으로 전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결국 공부에 전혀 뜻이 없는 사람도 일반고 진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증가는 전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시설에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심하다. 성폭력피해로 인한 장기간의 결석, 원치 않는 전학, 학습 진도 따라가기 어려움, 낯선 곳,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 관계 맺기 어려움 등이 겹쳐 새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달리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시설에서 등교를 강권하다 보면 시설에서조차 가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고교위탁교육과정이 있어 원적을 학교에 두고 기술학교나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은 등교를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고교 위탁교육과정의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거나, 사이버 학습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 ⑥ 무료법률지원제도의 실시

열림터는 개소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고소장 작성부터 조사 동행, 재판 모니터링까지 꾸준히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열림터에서는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5 2011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지원 개정.

이유로 고소를 생각지도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가해자 처벌이 피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가족에게도 “성폭력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의 잘못임”을 확인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2008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이 시행된 이후에는 전문가 연계로 지원하기도 한다. 다양한 무료법률사업이 시행되면서 공식적인 법률지원에는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비가해 가족들의 회유나 협박, 귀가를 종용하는 가족들의 강요 등의 현실은 피해자의 안전과 치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 ⑦ 입소 기간의 현실화<sup>6</sup>

열림터 초기 입소 기간은 30일이었다. 이후 6개월, 9개월로 연장되었지만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을 받고 재입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입소 기간의 제한은 생활인들에게 시설 생활에 무기력하게 안주하지 않도록 하고 자립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함이지만 반면 입소 기간이 제한될 때 느끼는 생활인의 불안감 또한 크다. 얼마 동안 열림터에서 살 수 있을지 늘 불안해하며 퇴소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이었다. 성인들도 월세라도 얻으면 퇴소하게 했는데 그 후로도 오랫동안 의지할 곳 없이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 열림터에서는 청소년의 경우 보호기간과 관계없이 졸업할 때까지 머물도록 했다. 중학교 2학년때 들어온 생활인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퇴소하게 된 것은 운영지침에 메이기보다는 생활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지원 방법을 찾으려고 한 결과이다. 열림터에서는 성폭력피해 생존자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생활인의 상황에 따라 시설장이 보호기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단기시설이 아닌 장기시설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시설보호기간에 중장기가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현재에는 시설의 유형과 상관없이 미성년 입소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 ⑧ 중간집 ‘하담’ 운영의 경험

2003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폭력피해여성들을 위한 시설 지원사업에 공모하였다. 그해 12월 중간집(단기시설도 아니고 장기시설도 아닌) 개설의 형태로 임대료를 포함한 1년

6 2010년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쉼터의 보호기간 연장(성폭력피해자는 2년까지, 친족성폭력피해자는 만18세까지)으로 생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활인 개인별로 장기적인 지원방향 및 자립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간의 운영비로 2억5천만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중간집’ 하담을 개소하였다. 하담은 사회적 지지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단기시설을 퇴소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립의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설립되었다.

따라서 단기보호시설의 세세한 지원 방식과는 달리 하담지기가 거주하지 않고 하담인들이 자치적으로 생활공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하담지기는 1주일에 1회 방문하여 상담하고 시설 운영은 생활인들끼리 가족회의를 통해 공과금 분담, 청소,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분담했다. 하담에서는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기간이 하담인들에게는 자립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각자 취업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상담을 받고 지원 방법을 알아보는 것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지원시설과 유사한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장기 자립 공동체를 목적으로 운영되던 하담이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의 짧은 기간만 운영된 후 해소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하담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을 했거나, 취업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담의 입소 규정에 따라 입소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실상은 단기시설을 퇴소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하담 입소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원가정이 해체되거나 원가정의 상황이 너무 열악하여 갈 수 없는 단기 시설 퇴소인의 자립을 도울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입소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자립지킴이공동체의 상을 두고 활동가들 끼리도 혼란을 겪게 되었다. 자율적인 운영원칙은 지켜지지 않고 하담지기가 문제 해결에 개입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졌고 결국 열림터와 중복되는 하담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컸다.

이 때 상담소에서 제안한 중장기쉼터 지원 계획이 연기되면서 정부에서는 중간집 하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중단을 통보하며 단기시설로 등록하라고 제안했다. 상담소에서는 하담의 미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 끝에 부설기관 하담을 해소한 후 고양·과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하담은 조기에 해소하게 되었지만 하담의 설치 운영은 열림터가 10년간 운영하면서 단기쉼터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한 중장기시설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이며, 피해자를 긴급 구호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사건지원과 생활 지원에 급급하던 쉼터 운영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시도였다.

## 6.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

전국피해자보호시설 31개소의 총 입소 인원은 400여명이며 활동가의 수는 170여명에 불

과하다.<sup>7</sup>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드러나야만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이런저런 문제 해결 방법들이 제시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비공개시설로 쉼터의 역할이나 지원내용들이 거의 외부로 알려질 기회가 없다. 입소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성폭력피해를 공공연히 호소하며 처벌을 강조하고 치유회복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없으며 되도록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 쉼터의 활동가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드러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수가 작다고 해서 성폭력피해생존자의 목소리가 묻히면 안 될 것이다.

제한적 후견인 지정 관련 문제도 수 년 동안 계속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시설전산관리번호, 주민등록부열람제한, 학교추천전학의 문제들은 지침으로는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생활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그동안 각 시설들을 포함한 전시협에서는 쉼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의제화하여 정책 과제들로 제언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당면과제들에 관한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 ① 시설장의 제한적인 후견인 지정제도 도입<sup>8</sup>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성폭력피해 청소년들에 한해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조치를 시설장이 할 수 있도록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후견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설의 장은 운영지침에 따라 생활인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성인과 달리 보호조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이 시설장에게 부여되지 않아 생활인 지원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피해가 걱정되거나 보호에 소홀한 가정 형편을 알지만 비가해 가족이 친권자라는 이유로 생활인을 퇴소시키기를 중용할 때에는 열림터가 그 퇴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된다. 생활지원도 원활하지 않다. 시설장에게 보호자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친권자와 연락을 할 수 없는 청소년 생활인의 경우 핸드폰 개통과 통장 개설이 제한된다. 이 때문에 열림터에서는 전시협과 함께 정책제언을 통해 시설장이 생활인의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적인 권리만을 허용해 줄 것을 수 년 동안 제안하고 있다.

7 2019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83-89.

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 직무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8년부터 발의 준비 중이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 ② 전산관리번호 개선

전산관리번호를 사용 중인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생활인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생활인의 비밀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전산관리번호가 실제 사용 때는 시설생활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번호의 구성을 주민등록번호의 체계와 유사하게 해서 전산관리번호 사용으로 불리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전산관리번호 사용으로 청년 희망통장을 만들거나 기타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전산관리번호로 금융전산망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③ 유형이 다른 시설의 동등지원

현재 전국에는 31개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있다. 시설은 일반·장애·특별로 구분되어 있는데 유형별로 운영비 지원과 사업비 지원의 차이가 크다.<sup>9</sup> 특별시설에 비해 운영비 지원이 일반시설은 57.7%, 장애인 시설은 78.7%이다. 사업비 지원은 일반시설이 65.8%, 장애인시설은 83.8%이다. 일반시설은 특별시설이 개소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친족성폭력피해 청소년의 입소율이 높으며 장애인의 입소율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시설은 전국에 9개소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장애인 등록증이 없는 성폭력피해장애여성은 일반 시설로 입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반 시설 중 장애인시설로 전환을 원하더라도 엄격하게 규정된 설치 기준을 따르기는 어렵다.

이처럼 일반 시설에 장애를 가진 입소자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지원 부담은 고스란히 시설로 전가되어 상담원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2019년 4월부터 1인의 인력이 지원되어 업무 부담은 다소 감소되었으나 이 또한 운영비 증액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운영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다. 사업비 지원에서도 시설 유형별 차이가 커서(특별을 100으로 했을 때 일반은 65.8%, 장애인은 83.8%임) 어느 시설에 들어가는 지에 따라 입소자 개인이 지원받는 규모가 달라지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 ④ 주거지원<sup>10</sup>의 현실적인 대책마련

---

9 2019년 여성가족부 시설운영지침 p101에 따르면 2019 보조금지원단가는 일반과 장애인, 특별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으며 일반과 장애인은 위탁과 비위탁으로 나뉘고 유형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 규모가 다르다.

10 운영지침상에는 성폭력피해여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 과정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잦고, 실제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매입주택 임대도 신규분양에만 해당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수도권외의 경우 예비입주순번을 받아도 전거주자가 퇴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경우는 없기에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고민은 어느 젊은이들도 다르지 않지만 시설을 퇴소하는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욱 크다. 열림터에서는 퇴소를 앞두고 자립주거지원시설이나 독립적인 거처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자립주거지원 시설이 서울에는 없다. 수도권에는 인천, 지역에는 울산과 부산에 1개소씩만 있기 때문에 서울을 근거지로 하는 피해자들은 퇴소 후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성인의 경우에는 자립지원금도 없다. 현재 자립지원금은 미성년자가 시설 입소기간이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에만 퇴소 시에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성인의 경우에는 전혀 지원이 없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퇴소자는 심의를 거쳐 5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성인 퇴소자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이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저축으로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적은 돈이지만 성인들에게도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받는 조건도 마련되고, 청년주거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

#### ⑤ 입소자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생존자들은 성폭력피해로 인한 후유증뿐 아니라 원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빈곤, 가정폭력의 피해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친족성폭력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수차례의 자해 시도를 하거나 심한 자해충동으로 시설생활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 각 시설에서도 정신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공동생활을 함께 하기 어려운 생활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의가 입원을 권유한 경우에도 보호자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본인이 거부하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다. 자신을 위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인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어 활동가들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거처가 없는 생활인을 강제퇴소시킬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별 탈이 없기만을 바라게 된다.

전시협에서도 2016년부터 정책토론회에서 시설들의 의견을 모아 방안을 논의했으나 복약지도, 지속적인 상담, 위기 시 대응방법을 숙지토록 하는 것 외에 현재 시설장의 권한으로는 해 볼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단번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시설 내에서 불상사가 생기면 오로지 시설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입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교생활부적응으로 등교를 거부할 때 억지로 가게 하면 시설에서도 가출하는 경우가 생긴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기술교육을 받고 싶어 하거나, 검정고시를 보고 싶어하는 경우에도 학습 지원이 충분치 않다. 시설 안에서 일상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렵고 또래와 집단을 이루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기초교육의



필요와 학력 인정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⑥ 시설퇴소 후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마련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고 있다. 퇴소하기 수개월 전부터 열림터 활동가들은 퇴소 예정 생활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직장, 상담 종결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활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매우 커서 퇴소를 준비하며 처음 입소할 때의 심리상황을 겪기도 한다.

퇴소한 이후가 더 어려운 이유는 사건 이후 원가족과의 관계가 해체되어 시설을 떠나면 혼자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사로운 일부터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도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게 된다. 어렵게 취직을 하고 자립을 한 사람들도 직장 생활, 연애, 결혼의 과정에서 성폭력의 후유증이 새삼 발견되어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현재 시설 운영지침에는 퇴소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치유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이다. 생활인들이 퇴소했다고 해서 치유회복 과정이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응급 치료의 역할을 한 것이라면 퇴소 후의 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치유회복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홀로서기를 지지하는 정서적 지원, 재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정보 제공, 자원의 연계가 있어야만 자립이 가능하다. 혼자보다 함께 할 수 있는 자조 집단을 구성하여 사회적인 지지망을 만들어야 한다. 열림터에서는 퇴소 후에도 가능한 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화, 개인 면담을 해왔다. 상담소 행사나 송년회 때 퇴소인과 생활인, 전활동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정기적인 퇴소자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다른 시설들도 형편에 따라 퇴소자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지침으로는 시설 활동가들이 업무 영역 안에서 퇴소자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온전히 시간 외 업무가 될 수밖에 없다. 생활인 지원만큼 중요한 퇴소자 지원을 위해서는 퇴소자 지원 체계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안에 명시되어야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다.

## 7. 맺음말

설립 초기의 열림터는 지원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생활인 지원의 전 영역에서 필요성을 찾아 만들고 연계처를 찾는 좌충우돌의 시기였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부족해 좁은 집에

11명이 머물던 때도 있었고 화장실, 욕실 사용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쉼터 개소가 늘어나 전국적으로 쉼터가 유형별로 분류되고 설치되면서 장애인 쉼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일반형 쉼터 부족에 대한 고민은 해소되었다. 시설마다 정원을 초과해 입소해 있던 상황도 해소되었다. 반면 새로운 고민은 위기상황임에도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피해가 우려되어 퇴소를 말리려고 애를 써도 퇴소해 버리는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또한 생활인의 자율성 확보에 대한 요구와 생활인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활동가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조율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할지도 문제이다.

근무 환경도 24시간 쉼 없는 쉼터의 운영 구조는 좀처럼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 때문에 야간근무자의 장기근속이 어렵다. 생활인의 안전과 활동가의 부담을 덜어줄 지점을 찾고 있다. 25주년을 맞아 열림터는 현재의 쉼터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생활인, 활동가,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니 열림터도 변화할 지점을 찾아 가야한다. 미래를 계획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열림터는 다음과 같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 목표를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 ① 다양한 치유회복프로그램 마련과 자율적 참여보장

현재의 치유회복프로그램은 효과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생활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인 흥미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각각의 형편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설 입장에서도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진 구성, 기금의 사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침을 따라야 한다. 기금도 항상 5월이 되어서야 집행되니 상반기에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열림터에서는 올해부터 기금 신청액을 대폭 줄여서 기간과 사용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만큼 신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금신청은 신중하게 하고, 대신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려고 한다. 희망 프로그램을 사전 조사하고 운영 횟수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입소기간과 형편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도 가능한 프로그램을 시도해 볼 계획이다. 이미 기금과 관계없이 열림터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용도 그때그때 생활인의 요구에 따라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앞으로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다.

### ② 퇴소자 지원 확대

그동안에도 열림터에서는 초기부터 퇴소자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앞으로 퇴소자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여 퇴소자 지원 담당 지정, 지원 내용, 시간과 횟수를 합의하여 실

시하고자 한다. 모든 생활인들은 원한 경우, 퇴소 이후에도 자유롭게 열림터와 소통하도록 한다. 퇴소자의 자조모임 구성을 위해 정기모임을 진행하고, 필요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간과 경비 지출을 위한 예산을 세운다.

### ③ 활동가 역량강화

성폭력피해자상담과 생활인 지원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활동가 교육의 기회를 넓힌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다. 연간 1회 이상 외부 교육과 워크숍 참석,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면 시설장의 업무도 순번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고루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 ④ 새로운 주거공간의 상상과 실천

현재 쉼터의 운영 형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고 규칙에 메이기 싫어하는 생활인들이 적응하며 생활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입소 할 때의 위기상황이 지나고 나면 시설에 적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귀가시간의 제약, 휴대폰 사용 제한, 외박의 제한 등 각 시설마다 공동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들을 지키야 하고, 치유회복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시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고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공간이 주는 불편함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초기 지원이 끝나면 자립 의지와 자립 역량이 있는 퇴소인들에게 단계별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쉼터-그룹홈-자립주거지원시설-중간집-자립의 그림표를 가지고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열림터가 지금 생각해보는 새로운 중간집은 보호시설이나 주거지원시설보다 더욱 생활인 자율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 형태이다. 개인 생활과 자율적인 삶을 원하는 생활인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보장하고, 열림터와의 관계는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지원으로 생활인들이 자율적인 선택으로 겪을 수도 있는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새로운 중간집 상상의 이유이다. 아직 명확한 실행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과거 하담 운영의 경험을 살려 하담보다 더 자율성을 보장하고 생활인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계획하고자 한다.

열림터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그 힘을 믿는다. 성폭력피해생존자가 더 이상 열림터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까지 열림터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여성폭력피해자 추모 및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공동행동(2013), 『여성안권의 관점에서 본 여성폭력피해지원시스템』,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12),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13),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14),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2016), 정책제언 자료.
- \_\_\_\_\_ (2017), 정기회의 및 워크샵 자료집.
- \_\_\_\_\_ (2018),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 자료집.
- \_\_\_\_\_ (2019), 정책토론회 및 정기총회자료집.
- 조주은(201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근거하여 폭력피해자의 정보가 집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자문의견”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1995), 『내일을 여는 열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5.10.24.
- \_\_\_\_\_ (1999),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9.09.14.
- \_\_\_\_\_ (2001),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내일을 여는 쉼터』, 2001.11.
- \_\_\_\_\_ (2004),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열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10.06.
-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차립지지공동체 '하담 3년 돌아보기』, 2007.04.05.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기획, 김지현·김효잔·이미경·이소은·이어진·정정희(2014),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 친족 성폭력 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한다』, 이매진.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개념을 재사유하기

류수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 1. 들어가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 열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흔히 열림터 생활인<sup>1</sup>을 떠올릴 때 그의 성폭력 피해에 집중하기 쉽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성폭력 피해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생활인들의 성격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생활인에 대한 지원의 범위, 종류, 방식도 그러하다. 누군가는 성폭력 사건의 법률지원이 시급하고, 누군가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이, 누군가는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군가는 하루하루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 필요하며, 또 누군가는 앞으로 어떻게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한 어려운 고민을 거듭한다. 이 모든 것은 각 생활인의 개별적인 고민이 아니라 한 생활인이 동시에 겪는 문제일 수도 있다. 또 어떤 때에는 도드라져 보이는 문제 없이 활동가와 생활인이 함께 웃고 떠들며 그저 일상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열림터 안에서는 지원과 생활, 관계 맺기가 모두 섞인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뒤섞인 모든 일들을 ‘피해자 보호’라고 정의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2장 ‘피해자 보호 지원 시

---

1 열림터에서는 시설 입소인들을 ‘생활인’이라고 부른다. ‘내담자’, ‘입소자’ 등의 여러 명칭을 거쳐 좀 더 정치적으로 올바른 단어를 택하고자 노력했었고, 2009년 무렵 ‘생활인’이란 단어가 탄생했다. ‘생활인’은 ‘열림터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활동가들 중에는 ‘생활인’보다 대안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더 친근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식구’라고 부르는 등, 시설에 입소한 이들을 어떻게 호명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 각 시설마다도 입소인을 부르는 명칭이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모든 보호시설의 입소인을 ‘생활인’이라고 지칭한다.

설 등의 설치' 운영을 보면 열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13조(보호시설의 업무 등)

①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3. 30.>

1. 피해자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4. 제11조 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열림터에서 생활인과 함께 하는 매일의 일상들은 '보호' 업무의 일종으로 규정된다. 생활인들과 어떻게 생활의 호흡을 맞춰갈 것인가, 어떤 관점을 주지하며 함께 생활할 것인가는 열림터가 매일매일 당면하는 가장 큰 사안이다. 관계 맺기, 생활규칙 설정, 가족회의 방법에 대해 열림터 뿐만 아니라 많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고민을 거듭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곧 시설의 방향성을 만들어나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보호'도 마찬가지로이다. 누군가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특정한 관점이 반영된 행위이며, 그 관점에 따라 보호의 방식과 내용도 달라진다. 그렇기에 더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는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체계가 '보호'라는 이름으로 마주하게 되는 '생활', '관계', '지원'을 어떤 관점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보호시설인 열림터는 어떤 관점으로 피해생존자를 '보호'해야 할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에 관해서는 그동안 논의된 바가 거의 없다. 다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발행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업무 매뉴얼> (이하 업무 매뉴얼)은 '여성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반성폭력 쉼터 운동 차원에서 '보호' 역할에 비판적 성찰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정부와 쉼터는 피해자에 대한 복지적 서비스 제공을 넘어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와 성폭력을 조장하는 한국사회의 성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쉼터가 '보호' 시설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변화되는 피해자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주의 원칙으로 돌아가 반성폭력 쉼터 운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업무 매뉴얼>, 19쪽



〈업무 매뉴얼〉은 두 가지 큰 주장을 한다. 첫 번째는 쉼터가 ‘보호’시설 이상의 의미와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쉼터의 운영이 여성주의 원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지만 ‘보호’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한 여성주의는 시기와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논쟁 되고 변화하는 가치라는 점에서도 쉼터의 여성주의적 운영이 무엇인지 지속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보호 개념에 관한 기존 논의는 주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집중되어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주요 논의는 보호에 주안점을 두던 쉼터의 업무가 자립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박영란, 2007; 공미혜, 2017; 한국여성의전화, 2017). 박영란(2007)은 각 시설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전략적 욕구’, 즉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자립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시급한 당면과제가 된 이유는 입소인 다수가 자녀를 동반한 성인 여성들로, 시설에 머무는 동안 가해자 남편의 경제공동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경제공동체를 꾸려 자립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인 열림터 생활인은 대부분 10대, 20대 초중반의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로서, 그 다층성과 역동에 있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인과는 차이가 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기존의 ‘보호’ 담론을 확장하여 시설과 시설 생활인의 목표를 ‘자립’으로 이동시킨 것에는 여성주의 운동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기도 하다. 허민숙(2011)은 가정폭력에 법제화 목적이 가정에 대한 보호 개념으로 자리 잡히면서 여성의전화 등의 단체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는 주장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짚으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과 보호는 곧 시민권의 문제임을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논의한다. 마찬가지로, 성폭력피해자보호정책 역시 성폭력을 특정 가해자에 의한 개인의 범죄 피해로 한정해 조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법제 시스템과 사회 담론으로 말미암아, 성폭력 피해 사례를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역시 성폭력 피해를 공적 단위에서 외화하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급급하게 된다. 그렇기에 피해자보호시설 차원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의 의미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주거공간이자 생활지원공간이라는 점에서 성폭력상당소나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지원과 보호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 지점에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여성폭력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과도 유사하다. 성폭력보호시설은 여성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여,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회복지시설과는 출발을 달리한다. 가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에 노출되어 원가정과 단절될 필요가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지체계를 만들고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었던 성폭력 경험을 공적·사회적으로 다루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시설을 둘러싼 요구와 선언들 역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운동적 방향을 고민하는 데 유효하다. 장애인은 모두 시설이라는 공간에 수용되어 살아야만 한다는 장애인 시설화 정책에 반대하는 ‘탈시설 운동’과, 원가정을 벗어난 청소년들의 갈 곳을 쉼터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청소년주거권 운동’이 그 참조점이다. 두 운동은 특정 계층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한정된 주거/생활지원 정책에 반대하며 삶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 보장을 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역시 시설이 가지는 위치와 보호자 역할에서 비롯되는 권력을 섬세하게 주시하고 부단히 성찰해야 하기에, 탈시설운동과 청소년주거권운동에서 제기하는 시설의 위치성과 권력에 대한 고민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피해자 ‘보호’ 역할에 집중하여, 25년차를 맞이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동의 자리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 사회에서 여성과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배제하는 ‘보호’를 거부하고 폭력 피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여성운동의 움직임을 다시 환기한다. 이를 토대로 ‘권리로서의 보호’와 ‘대상을 수동화하는 보호’의 딜레마를 겪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고민을 분석한다. 열림터만의 고민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열림터에서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7개소, 청소년쉼터 3개소, 여성폭력피해자주거지원시설 1개소, 긴급 쉼터를 포함한 유관기관 3개소, 총 14개소를 기관방문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자문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 글은 그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열림터가 생각하는 현재의 ‘보호’ 개념의 한계를 짚는다. 이후 피해생존자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보호’를 다시 정의하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팎의 다양한 변화와 가능성을 나열해본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수행하는 피해자 ‘보호’란 무엇일까?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서 사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 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란 어떤 관점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은 곧 여성주의 쉼터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보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여성 보호’ 담론의 역사

여성주의 운동으로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분명 성폭력 경험을 공적으로 다루고 지원

해야 한다고 국가에 요구하여 시작된 프로젝트이지만, 동시에 그간 국가가 여성을 대상으로 펼쳤던 보호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동안 국가 정책에 의한 여성 ‘보호’가 어떤 방식으로 담론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현재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내용을 정리하는데 필수적이다.

## 2-1. 가부장적 여성 보호

여성의 권리 운동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시기에도 여성보호정책들이 있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부녀정책’의 일환으로서 부녀보호 사업이 국가행정단위에서 전개되었다(신필식, 2017). 다만 이 시기의 여성보호정책들은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사회적 일탈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정상’ 국민과 가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 이때의 보호는 격리와 관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성관매여성이나, 성관매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요보호여성”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요보호여성”들은 부녀보호소 등의 보호지도소에서 직업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명분 아래에 격리 수용되었다.<sup>2</sup>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 여자”(잠재적 매춘여성)로 통칭하고, 직업보도를 명분으로 이들을 격리수용하는 보호지도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보호지도소들은 윤락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여성들을 수용절차와 기간 없이 수용하고, 강제로 결혼을 알선하거나 직업교육을 시켰다(박정미, 2017).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보호지도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1995년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억압적 수용과 교육에서 탈출하기 위해 일부 원생들이 방화를 시도하여, 40여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부녀보호지도소는 폐쇄되었다(박정미, 2017: 418).

부녀보호소는 1960-70년대에 만연했던 ‘부랑인’에 대한 통제와 관리 정책과도 연결을 가진다. 자본주의적 노동시장이라는 국가적 규범 바깥에서, 노동하거나 학습하거나 가정 안에 머무르지 않고 거리에 나와 있는 이들은 부랑인이 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정상성과 규범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했던 60-70년대의 부랑인 정책은 거리의 부랑인들을 강제수용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정수남, 2014). 이처럼 당시 정상 규범 바깥의

---

2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를 “요보호 여자”(잠재적 매춘여성)로 통칭하고, 직업보도를 명분으로 이들을 격리수용하는 보호지도소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1961년 서울에서 시작하여 1970년까지 전국적으로 부녀보호지도소 31개소가 만들어졌으며 22개소가 199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경찰 단속에 검거된 기지촌 여성 중 일부는 다른 요보호 여자들과 함께 이 시설에 수용되었다.”(김원, 2015)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배제, 강제적인 교육과 수용으로 이어졌다. 국가는 이들에게 여성 규범에 알맞은 교육(양재, 미용 등)을 제공하고, 이성애정상가족을 만들기 위해 강제 결혼을 실시하고, 이를 ‘보호’라는 이름으로 행했다. 이때의 보호는 국가의 ‘정상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상인’들로부터 ‘비정상인’들을 ‘보호’해낸다는 의미가 강하다.

부녀보호정책은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기도 했다. 1970년대 초에 미혼 출산 여성들이 조명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 사업은 주로 미혼모 심리상담과 입양상담, 조산원 설립 등이었다. 미혼 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사업은 미혼모에게 아이를 해외입양을 보낼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혼제도 밖의 가족 형태를 승인하지 않는 효과를 자아냈다. 1970년대 초기에는 미혼 출산 여성에 대한 보호 사업을 갖 진행하기 시작했던 때인데, 이 시기에는 이들 여성이 “혼란과 죄책감”(신필식, 2017: 341)을 느끼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중의 온정을 이끌게 하는 담론이 유행했다. 반면 보호 사업과 상담 사업이 활성화되어 미혼모가 가시화되고 미혼모가 출산한 요보호아동의 수가 증가하자, 1970년대 중후반부터는 미혼모에 대한 도덕적 비난이 강화되며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한다(신필식, 2017). 이러한 경향성은 ‘보호’를 골자로 하는 국가 지원 정책의 허점을 드러낸다. 보호의 대상이 과연 보호받을만한 인물인가를 검증하기 때문이다.

보호받을만한 사람을 상정하며 선별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다움’의 담론과 직결된다. 피해자다움은 피해자가 과연 보호받을만한 사람인지 질문하며, 폭력의 가해자나 폭력을 생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피해자를 의심하고 심문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모습은 특정한 방식으로 고정되지 않으며 항상 다층적이며 역동적이다. 피해와 폭력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어떻게 폭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런 구조 속에서 피해생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중단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일 것이다.

## 2-2. 여성폭력에 대한 권리 보장으로서의 보호 요구

1990년대부터 국가 정상성이나, 성폭력 통념, 사회규범에 걸맞지 않은 여성들을 격리, 배제, 순응하게 하던 기존의 보호 정책에 권리 개념이 기입되기 시작했다.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여성운동은 기존의 요보호여성 ‘보호’ 담론을 권리적 측면으로 재해석하기 위해 경합을 시작했다.<sup>3</sup> 1998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포한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은 “피해를 극복하

3 1991년 21년 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 살해, 1992년 13년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살해한 사건 이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있었으며, 1993년 12월 국회에서 법안이



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모든 정보와 지지를 주변, 관련단체, 사회로부터 제공받을 권리”를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로 명시하여 선언하였다. 여성에 대한 권리 운동으로서 폭력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과거의 여성 보호조치와는 달리 성폭력 권리헌장에서 ‘보호’는 주로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로 제시되었다.<sup>4</sup> 이 때의 ‘보호’는 성폭력피해생존자를 보호해야하는 무력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젠더 폭력이 만연한 사회 구조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피해생존자들에게 원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피해를 경험하지 않고, 피해자 통념에 저항할 수 있는 ‘보호’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제도화 역시 성폭력피해자들의 권리를 사회에 요구하는 운동의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당장 폭력을 피하기 위해 갈 곳이 없던 내담자를 만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 긴급 피난처인 열림터를 만들었다. 이를 국가가 보조하게끔 만든 것은 사회적 문제인 성폭력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의 일환이다.

### 3. 보호주의 담론과 피해생존자 권리 보장 관점에서의 보호 담론의 경합

이처럼 여성운동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권리의 차원에서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보호’는 대상자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객체(지원의 대상)로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해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의 반성폭력운동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인식하기보다는 힘없고 돌봐줘야 할 성폭력 피해자에게 ‘시혜’나 ‘배려’ 차원으로 접근하게 하는”(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181) 현재의 법정책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표명해왔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역시 제도화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일종으로 관리되면서, 대중적인 ‘보호’ 담론과 권리로서의 보호 담론 사이에 놓였다. 열림터 역시 ‘보호’ 담론이 품고 있는 여러 딜레마 속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 3-1. 국가가 상정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역할

---

통과되어 1994년 1월부터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었다. 1993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1999년 성희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한국여성단체연합, 2017).

4 “고소 시 자신의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 “사생활보호, 심리적 안정을 위해 비공개재판을 신청할 권리”

피해자보호시설이 국가 보조를 받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사회가 짊어져야 하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어떤 방향성을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문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 속에서 피해자보호시설의 보호 역할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사고 시설’을 만들기 위한 피해자 수용에 한정되어버린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생활인 숫자를 실적으로 여기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각 지자체가 성폭력상담소에 더 많은 상담 실적을 요구하는 것처럼<sup>5</sup>, 지자체들은 보호시설에 생활인 수를 증가시키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우리 씬터는 지금 신규생활인 수가 적은 편이다. 1년에 신규입소자가 3명이었던 때도 있었다. 신규생활인이 적은 것은 기존 식구들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지자체에서는 반기지 않는 것 같다. 담당 사무관이 변경될 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지자체에서는 자립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생활인도 퇴소시키라는 압박을 주고 있다.

(A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자료 중)

보호시설은 생활인들에게는 주거 공간이다. 때문에 생활인의 잦은 드나들은 기존 생활인들에게는 심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안정성의 저하를 야기하기도 한다. 신규생활인 수를 ‘실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현재 거주 중인 생활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고민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생활인 수를 실적화하는 것은 지자체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평가지표 역시 생활인의 수를 실적으로만 파악한다. 생활인이 정원의 몇 퍼센트에 달하는지는 4단계 양적 평가의 대상이다.<sup>6</sup> 보호시설에 대한 평가는 현재 보호시설의 상황에 대한 진단이자, 이 진단을 토대로 보호시설의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생활인 수의 감소에 따라 양적 평가 이후 이에 대한 다른 지원이 고민되거나 제안된 적은 없었다.

1994년 1개로 시작했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현재 31개가 되었기에 개별 보호시설의 신규 생활인 감소는 당연한 일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5 “기획재정부의 2019년 ‘정부합동평가’ 대비를 위한 추진실적 보고 양식에는 매해 전년도보다 상향된 목표치를 달성하게 하고 있으며, 이런 결과로 각 지자체에서는 상담소들에게 실적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김보화 외, 2018: 151)

6 여성가족부가 평가주최기관으로 실시한 2018년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평가지표는 입소인원대비 평균 보호인원 비율을 평가한다. 정원 대비 75% 이상 보호하고 있을 경우 ‘탁월’, 60-75% ‘우수’, 40-60% ‘보통’, 40% 이하 ‘미흡’으로 평가된다.



이 사회적으로 좋은 지표라고 할 수도 없다.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본래 삶의 공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의 부재에서 드러난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은 ‘일반’, ‘장애’, ‘특별’ 세 가지 형태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시설의 지원 항목은 섞여 있다. 가령 열림터는 설립 시작부터 주로 친족성폭력피해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다. 최근 ‘일반’시설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생활인이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sup>7</sup> ‘장애’시설에 지원되는 활동보조인과 예산 보조가 필요하여 ‘장애’시설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일반’시설도 있지만, ‘장애’시설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공간 보강이 어려워 ‘일반’시설로 남아 있는 시설도 있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형태는 세분화되었으나, 각 시설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지 않는 상황이다. ‘일반/장애/특별’ 시설 분류가 피해생존자의 요구나 지원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분류만을 위한 기준은 아닌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B 시설의 경우 외부에서 생활인 지원이 끝난 후 생활인이 귀가하지 않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사건이 있었다.<sup>8</sup> 이 사건은 장애가 있는 생활인의 귀가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명 문제적이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한 피해생존자를 어떻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sup>9</sup> 마련 없이, 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한 활동가의 책임소재만이 부각되었다. 피해생존자의 일상지원에 대한 책임을 보호시설에 일임하는 것은 보호시설의 부담을 가중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원 질을 하락시킨다.

최저임금에 맞춰 보조금이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일과 활동가의 사생활이 분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문 열고 나가도 일이 있으면 돌아와야 하는 것의 시설 활동가의 상황이다. 1년에 3명이 퇴사한 경우도 있었다. 활동가가 소진되면 그 개인 홀로 소진을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 활동가가 소진되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거나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활동가의 노동권과 소진은 생활인의 인권과도 연결된다.

(C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 
- 7 “폭력피해여성장애인 지원에 대한 의견” 전국시설협의회 4월25일 정책토론회 발표문을 작성한 조상미(2019)는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맥락”으로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부족, 타 지역 입소 거부” 등을 꼽는다.
  - 8 전라일보, “성폭행 피해 쉼터 입소 지적장애 여고생 심리치료받고 홀로 복귀하다 ‘2차 피해’”, 2019.03.14.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449>.
  - 9 실질적인 방안의 예로는 보호시설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결, 일반시설에서도 장애가 있는 생활인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자원에 대한 지원, 장애 특수성에 대한 종사자 교육 등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마주한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폭력이 만연한 사회에 대한 책무이자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보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입소인을 보호하라’는 1차원적인 요구만이 거듭될 경우, 더 적극적인 피해생존자 지원을 저해한다. 이는 결국 피해생존자 ‘보호’를 ‘시혜’로, 혹은 더 나아가 ‘수용’으로 전락시킨다.

### 3-2. 생활인과 활동가가 마주하는 ‘보호’ 개념의 딜레마

#### ① 생활규칙: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통제 사이

열린터에서도 생활인 보호와 생활인의 자유가 극단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공동생활을 하는 열린터에 만취해서 귀가해도 되는가?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청소년 생활인들이 홀로 외박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열린터는 이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열린터의 위치는 비공개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열린터 앞까지 친구들이 생활인을 배웅해 주어도 되는가? 일상 회복을 위해 적정 수면을 취해야 하는데, 취침시간에 휴대폰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sup>10</sup> 이런 질문들에 일관된 대답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터에는 생활규칙이 존재한다.

생활규칙은 생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보호시설 활동가들이 가장 많은 딜레마를 겪는 영역이기도 하다.

인권침해는 크건 작건 모든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활동가 입장에서는 생활인에게 매우 미안한 점이 많다. 나라면 이 시설에서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다른 쉼터 규칙을 그대로 썼는데, ‘절대, 반드시’ 라는 항목이 아주 많았다. 최근에 생활인들과 함께 생활규칙을 바꾸었다. 규칙, 규율, 약속을 생활인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설에서는 생활인들이 먼저 규칙을 만든 후, 일단 한번 해보고, 활동가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C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

10 현재 열린터에서 만취 귀가는 금지조항이다. 청소년 생활인 안전 확보의 책임이 보호시설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생활인에게는 가해자가 없는 원가정으로의 외박만 허용된다. 가해자들의 위치 추적 방식을 비롯한 성폭력피해자 신상보호가 필요하기에 열린터 생활인은 열린터 근처로 지인을 초대할 수 없다. 본인뿐만 아니라 휴대폰 불빛으로 수면을 방해받는다고 느끼는 주변 생활인들의 요구도 있기에, 취침 시간 이후로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 ‘금지’ 조항들은 가족회의와 활동가 업무회의에서 조율되어 변경되기도 한다. 이처럼 일상 단위의 ‘보호’는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단한 설명과 질문을 요구한다.



한 달에 한 번 공동체회의라는 것을 한다. 귀가시간은 10시까지로 정해져 있는데, 미리 전화해서 늦는다고 고지할 경우 11시, 12시까지 귀가를 허용하고 있다. 주말에는 외박을 허용하고, 주중 외박은 월 2회 허용한다. 과거에 생활규칙 위반에 대해 용돈 제한이나 휴대폰 제한 등의 룰을 적용시켜 보았지만, 크게 소용없고,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판단해 그런 종류의 벌칙을 없었다. 최근에는 전체 합의를 어길 시 생활인들과 다 같이 벌칙을 고민해보고 있다.

D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귀가시간은 10시이지만, 바쁜 일이 있을 때는 11시까지 귀가하도록 한다. 취침 시간은 따로 없다. 11시에 휴대폰을 걸었는데 인권 문제이기도 해서 건지 않을 것을 계획하고 있다. 생활규칙은 자유로운 편인데도 생활인들은 힘들다고 한다. 예전에 열림터에서 우리 시설로 온 △△은, 열림터는 너무 좋는데 귀가시간과 별점 때문에 사람을 답답하게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E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휴대폰 규제, 귀가시간, 외박 횟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많은 일상 규범이 생활규칙을 통해 설정된다. 시설에 들어온 이상 감안해야 하는 생활규칙은 ‘크건 작건 모든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갈등, 피해로 무너진 일상, 위기와 같은 위협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돕기 위한 장치이지만, 생활인의 보호라는 역할과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보호대상 개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통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생활인 보호를 위한 생활규칙들이 ‘여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것인지, ‘시설에서의 이탈 방지’나 ‘시설 운영에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은 아닌지 시설과 활동가들은 그 사이를 부단히 질문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이 모든 가치의 최우선이어야만 하는지도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공감의 민들레는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사들에 의해 위협을 감수하는 선택의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밝힌다(인권운동더하기, 2019). 생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위협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위협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는 것 역시 시설 활동가의 ‘보호’ 역할이 될 수 있다.

시설 유지를 위한 생활인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설 활동가들의 폭력과 인권에 대한 섬세한 감수성뿐만 아니라, 구조적 차원의 변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무사고 시설’만을 강조한다면 시설 활동가들은 위협을 감수하더라도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활인의 가능성을 제약할 수밖에 없다. 국가-시설-생활인 관계뿐만 아니라 시설의 환경과 같은 요인도 ‘보호냐 통제냐’ 딜레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C 시설 활동가는 개인공간이 보

장되어야 생활인 개별에게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며, 그래야 ‘공평’을 이유로 일괄적인 규제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힌다.

(시설)건물이 너무 좁은 것이 고민이다. 코골이, 이갈이, 화장실 이용, 뇌전증 등의 이유로 개인 공간이 필요한 일이 많다. 침터가 생활인에게 개인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공간이 없으니 모두 공평하게 규제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생활인의 권리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 개별 공간이 주어져야 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치료·회복할 수 있기도 하다.

C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중

생활규칙은 일상생활을 함께 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방지하고, 폭력 피해 치유를 위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루틴을 마련하고, 생활인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최소화하는 의미를 지닌다. 생활규칙이 목표로 하는 ‘보호’의 의미가 성폭력피해로부터의 회복을 돕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측면을 개선시켜야 하는지 끊임없이 토의해보아야 한다. 이 토론의 과정에는 보호시설 활동가와 생활인, 정책 입안자와 행정처리인, 대중의 관심이 모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열림터는 궁극적으로 피해생존자의 적극성을 살리며 힘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

## ② 시설 비공개: ‘생활인 신상 보호’와 ‘낮은 접근성’ 사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가해자들의 방문과 협박을 방지하고, 생활인들의 신상 보호를 위해 그 주소를 공개 하지 않는다. 생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한 시설 비공개 조치는 때로 입소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열림터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 상담원과 연계지원에 관련된 전화를 하다, 1388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름이 담긴 리스트만 확보하고 있을 뿐, 각 시설의 전화번호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입소연계를 할 수 없었다는 고충을 들은 바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 역시 연계지원을 위해 다른 지역의 1366에 열림터 사무 전화번호를 알려줘도 되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정보 비공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나. 보호시설 정보비공개

시설장은 시설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는 사례(종사자 채용공고, 법인홈페이지 등)가 없도록 주의



특별지원 보호시설 홍보 및 안내 시, 보호시설명만으로도 입소 피해자의 피해 유형(친족성폭력에 의한 피해자)이 유추가능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청소년 보호시설"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내

다만, 개별 안내 시에는 입소 가능 대상을 명시적으로 설명하도록 함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109쪽>

하지만 피해생존자들의 입소 연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정보 공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재합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 쉼터 역시 비밀시설이어야 하다 보니 오히려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계되는 입소인이 적다는 고민을 나누어주었다.

다른 상담소나 시설에서 E 쉼터를 잘 모른다. 비밀시설이어야 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한계성이 있는 것 같다. 꼭 비밀로 해야 할까?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필요성을 많이 체감한다.

E 시설 기관방문 인터뷰 내용

E 시설 인터뷰 내용처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존재를 아는 것은 피해생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 2018년에 열림터에 입소한 생활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열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직접 한국성폭력상담소로 전화상담을 하였다. 친족성폭력피해생존자인 그녀는 입소를 문의하며 "쉼터가 있다는 걸 안 다음 (피해가 일어나던)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이 피해생존자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피해생존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음을 공개화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또 다른 역할이 될 수 있다. 생활인 신상 보호와 보호시설에 대한 피해생존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공개 범위를 재설정하고, 생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한 수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 ③ 관계 만들기 : 평등성과 일방성 사이

활동가와 생활인의 이상적인 관계는 무엇이어야 할까? 보호시설의 활동가와 생활인은 서로 보호자와 보호받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관계 방식을 만들어낸다. '엄마'와 '자식', '선생님'과 '학생',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소비자' 등이 그것이다. 보호시설이 원가정을 일정 정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생활인들은 시설이 원가정을 대체해줄 것을 욕망하기에 '엄마'와 '자식'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열림터의 경우 생활인들은 활동가를

‘선생님’으로 호명하는데, 호명에 의해 쌍방 관계가 선생님과 학생과 비슷해지는 경우도 있다. 어떤 생활인들은 열림터를 피해와 관련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 되어주기를 요청한다. 이 관계들의 성격은 각각 다르겠지만, 이것이 과연 평등한 관계인가, 라는 점에서 딜레마를 갖는다.

‘엄마’와 ‘자식’ 혹은 ‘선생님’과 ‘학생’ 관계에서 생활인은 보호 받는 사람으로만 설정된다. 이 경우에는 위계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쉽다. 위계적 관계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뿐 아니라 주거와 일상을 지원하는 시설이라는 지원 시스템에서 특히 경계해야 한다. 생활인의 주거와 일상이 시설에 의존되기에, 시설 활동가는 생활인보다 권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가 사직하는 경우도 있으나, 생활인들은 규칙 위반 등으로 주거공간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저희나 쉼터 근무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쉼터공간이 청소년들에게 어려워지기도 한다. 만약 청소년과 쉼터 실무자들 간의 갈등이 있을 때 결국 나가야하는 사람은 청소년이 된다.

청소년이동쉼터 F 기관방문 인터뷰 내용

반면, ‘서비스 소비자’로서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생활인이라는 관계 설정은, 생활인과 활동가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역전시키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생활인과 활동가가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서비스 제공’만인 경우에는 상호 관계의 연대자로서의 성격이 상실되기 쉽다. 여성주의 상담은 내담자가 무력함에 익숙해지도록 적응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도모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정희진, 2004). 이 과정은 갈등과 논쟁의 연속일 수도 있다. 생활인이 서비스만을 제공받길 원할 때, 활동가의 개입은 어려워진다. 역으로 활동가가 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할 때, 내담자의 삶을 살피는 돌봄의 작업이 불가능해지기도 한다.

열림터는 생활인과 활동가 사이의 평등함을 지향해왔다. 그렇기에 ‘보호’라는 역할과 구도를 둘러싼 여러 성격의 관계들 사이에서 거듭 고민하고 있다. 서로의 변화를 기다리고, 다른 관점에서 실수를 바라보며, 함께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보호시설의 ‘보호’ 역할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 4.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으로 '보호'를 다시 정의하기

'보호' 개념이 이다지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반성폭력운동이 계속해서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만 머무르게 하는 선에서 법이 제정되는 상황과, 사회 분위기를 배격하고자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회고가 담긴 「성폭력 뒤집기」에 수록된 많은 글들은 한국 사회와 법제도 속의 '피해자 보호' 담론의 한계를 면밀히 지적한다.

“우리 상담소는 성폭력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보호'가 국가의 시혜나 배려 정도로 여겨지는 것에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피해자 배려'에서 '생존자 권리 보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활동을 추동해, 1998년에 여성연합과 함께 '성폭력피해자권리헌장'을 제정해 성폭력 추방 기간 행사에서 발표했다. (...) 피해자 보호가 아닌 '생존자 권리 보장'을 요구하고 주장해 우리의 철학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이경환·이미경·장임다혜,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182-183)

“애초의 문제제기이던 '젠더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에 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지금은 '보호주의'의 틀에 갇혀 있다. 지금 성폭력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는 아동 보호를 중심으로 형성됐고, 이것이 지금 성폭력을 대변하는 프레임이다. (...) 어떻게 젠더 폭력이라는 본래의 문제제기로 가게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303)

여기서 열림터의 복잡한 고민이 시작된다. 열림터가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이라는 이름에 그 활동의 영역을 국한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 보호시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폭력 피해로 인해 취약해진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있게끔 그들을 돌려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보호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호'가 항상 '권리'와 반대되는 개념인 것은 아니다. 이 글이 반복하는 것과 같이, 어떤 관점으로 '보호'를 사유하고 수행하느냐에 따라 보호는 피해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매김하기도 하고, 피해생존자의 적극적인 권리 보장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열림터의 '보호'의 역할이 피해생존자의 역량 강화와 권리 보장을 차원에서 이루는 성취도 분명 존재한다. 피해자보호시설은 가해자로부터 떠나올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호시설은 피해생존자로 하여금 직접적인 폭력의 공간이거나, 2차 피해의 공간 밖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 피해생존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보호자/보호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도 한다. 시설은 피해생존자에게 삶의 기반을 구축할 권리를 제공하며, 피해생존자는 피해로부터 멀어지고 치유와 회복에 집중할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폭력을 행하는 가족을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설은 개인이

혈연 중심의 가족에 속해있어야만 한다는 정상가족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삶의 형태를 제시하는 의미도 가진다.

한국 사회에서 '보호'가 일방적인 대상화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성은 확실히 경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호하는 자'와 '보호받는 자' 간의 명확한 위계에 익숙하다. 또 우리는 '보호하는 자'의 판단이 '보호받는 자'의 판단보다 유익할 것이라는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반성폭력 운동은 피해생존자를 수동적인 대상으로 위치시키고 성폭력을 개인화하는 '보호' 개념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다. 이러한 '보호' 개념과 열림터가 지향하는 보호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분리하여 정리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언어를 참조할 수 있다.

- 1)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여성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 2) 상담자와 내담자는 평등하다. 내담자를 대상으로 보지 말고, 스스로에게 힘이 있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 3) 여성의 눈으로 여성의 경험을 해석한다. 내담자의 몸/성 경험에 대해 증상을 판단하지 않고 그 해석의 힘을 기른다.

‘여성주의 상담 원칙’(<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나침반을 찾아라>, 2007: 40-42, 47)

보호 역할은 생활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고정하지 않고, 평등한 관계를 구축해야 함을 계속 상기하며 피해여성의 피해 경험을 정치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보호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에게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망이자,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피해생존자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구축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는 권리 주체라고 사고할 때 우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기존 통념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다.

생활을 함께 하며 생활인을 보살피게 되는 보호시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상담 원칙 이외의 참조점도 필요하다. 의식주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보호시설/활동가와 생활인의 관계는 여타 성폭력 상담에서의 상담원과 내담자의 관계보다 더 많은 의존성을 내포하게 된다. 의존과 보호 관계에 대해서는 돌봄과 보살핌에 관한 여성주의자들의 논의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커테이(2006)는 인간관계에서 의존이란 필수적이며, 취약한 이들과 그를 돌보는 이 사이에서 권력의 불평등이 생기는 당연하지만<sup>11</sup>, 그 불평등 관계가 지배 관계로 변모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존 관계는 상호호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

11 “사회를 평등한 개인들의 결사체로 상정하는 개념은 인간 조건의 부분인 불가피한 의존과 비대등성을 은폐한다”(커테이, 2006:59). 열림터는 꾸준히 ‘생활인과 활동가의 관계는 평등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불평등한 조건 속에서 위계를 지양하고 상호호혜를 지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기에, 커테이의 주장과도 양립할 수 있다. 다만 커테이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보호시설과 생활인 사이, 보호 관계에서 비롯되는 권력의 역학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다. 나아가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기에 의존/돌봄/보살핌(혹은 이 글에서 말하는 보호)의 책무를 사회화할 것을 요청한다(키테이, 2006). 허라금(2006)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연결망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사회에 요구하는 것이 보살핌의 사회화에 대한 여성주의 사유라고 정의한다. 이런 돌봄/보살핌 논의에 입각한다면, 성폭력보호시설의 ‘보호’는 성폭력피해로 인해 무너진 삶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존할 수 있는 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배적 관계를 경계하며, 생활인과 활동가 간의 돌봄의 호혜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선별적 사회복지체계 속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머무르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보살핌에 대한 사회적 연결망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

## 5. 나가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과 밖의 변화에 대한 상상

이 글은 ‘보호’ 개념을 세분화하며 반성폭력 운동의 일환으로서 열림터가 어떤 관점으로 피해생존자에 대한 ‘보호’를 추구해야 할 지 정리하였다. 열림터는 ‘보호’의 역할을 성폭력피해자를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자리매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회복과 치유를 위한 피해생존자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서 사유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여성 보호’를 사회적 배제나 격리, 또는 취약한 여성에 대한 배려와 시혜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오래된 담론의 자장에서 벗어나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다. 이 글에서 ‘보호’ 개념에 ‘의존’, ‘돌봄’, ‘보살핌’ 개념을 접목시키기도 했듯이, 더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피해생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는 명칭 변경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제도 속에서 열림터가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도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보호시설의 제도화는 성폭력 피해를 사회적 책무로 다루게 만드는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복지 수혜의 대상을 선별하는 한국 사회의 선별적 복지 체계 안에 포섭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제도화의 틀 속에서 자칫 열림터가 ‘치유’와 ‘일상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정상성에 부합하는 일상만을 무비판적으로 만들어 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재의 사회 속에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은 역량 강화와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피해 회복에는 시간·관계 자원·재정적 안정 등의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렇기에 빠른 피해 회복을 통해 사회로 편입하는 것은 항상 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정상성과 다른 형태의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일도 필요하다. 그렇기에 사회가 어떤 ‘정상성’만을 허락하는지 성찰하고, 그로 인해 피해생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도 열림

터의 역할일 것이다. 보호시설로 존재하면서도 동시에 현재의 복지 체계 바깥을 계속 상상하며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만약 열림터가 또 다른 형태의 '집'을 운영한다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생존자를 위한 주거 및 일상지원 시스템은 처음에는 열림터와 같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형태만 존재했었지만, 이후 주거지원시설이나 장애인자립지원생활공동시설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 시설들은 보호시설보다 가구당 인원수와 생활인의 드나듦이 적어 안정적이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치적인 생활규칙을 보장할 수 있으며, 생활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의 비중도 적을 수 있다. 최근에는 사생활 보장과 독립적인 삶에 대한 생활인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시설은 주거를 제공하는 기능도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 형태를 넘어 '적절한 주거(Adequate shelter)<sup>12</sup>'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지점을 고려한다면 방세 개에 최대 10명이 정원인 현재 시스템을 바꿔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독립적 공간이 보장되며, 활동가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립적인 공간 운영, 그와 동시에 피해생존자가 필요로 하는 관계의 연결과 생활지원이 가능한 형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열림터의 생활인들은 어느 시점에는 열림터를 떠나야만 한다. 하지만 열림터를 떠난다고 해서 모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또 열림터에서 가능했던 관계망이 갑자기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보호시설 형태의 다양화뿐만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만들어나가는 피해생존자 '보호'가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12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 4: 적절한 주거의 권리”는 점유의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고, 거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가 적절한 주거라고 설명한다.

## 참고문헌

- 공미혜(2017),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자립 후 삶과 도전 - 부산지역 주거지원사업의 주거공간 입주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7(2), 233-267.
- 김원(2015), “60~70년대 기지촌 계도화의 변곡점”, 『역사비평』 112, 153-185.
- 박영란(2007),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와 피해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한국여성학』 23(3), 188-214.
- 박정미(2017), “잊혀진 자들의 투쟁”, 『역사비평』 118, 407-435.
- 신필식(2017), “1970년대 신문기사를 통해 본 한국 미혼모 보호사업과 미혼모의 사회적 재현 변화 연구”, 『한국여성학』 33(3), 323-357.
- 에반 커테이(2016), 『돌봄: 사랑의 노동 - 여성 평등 그리고 의존에 관한 에세이』 박영사.
- 여성가족부(2019),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2014),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치유 · 회복을 지원하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업무 매뉴얼』.
- 정수남(2014), “잉여인간, 사회적 삶의 후기자본주의적 논리 - 노숙인부랑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8(5), 285-320.
- 정희진(2008), “여성주의 상담이란”, 『사건지원자를 위한 가이드-나침반을 찾아라! 개정판』, 한국성폭력상담소, 147-153.
- 조상미(2019),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의견”, 2019년 4월 전시협 정책토론회 자료.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더하기(2019), 『세계인권선언 70년, 연속토론회 -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 나침반을 찾아라』.
- \_\_\_\_\_ (2011),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회고와 전망』 이매진.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2018),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성폭력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자료집』.
- 한국여성단체연합(2017), 『한국여성단체연합 30년의 역사 - 폭력을 넘어 빈곤을 넘어 성평등의 세상으로』, 당대.
- 한국여성의전화(2017), 『쉼터 30주년 성과와 과제 - '보호에서 자립'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전화.
- 허리금(2006), “보살핌의 사회화를 위한 여성주의 사유”,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22(1), 115-145.
- 허민숙(2011), “가정폭력 재개념화를 위한 비교연구: 시민의 권리인가? 가정에 대한 보호인가?”, 『가족과 문화』 23(4), 95-121.
- 『전라일보』, 2019.03.14, “성폭행 피해 쉼터 입소 지적장애 여고생 심리치료받고 홀로 복귀하다 ‘2차 피해’”,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dxno=564449>.



## 열림터 퇴소자 지원활동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모색

전혜영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가

열림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설기관으로 지난 25년간 417명(2019년 9월 말 기준)의 성폭력 피해생존자들<sup>1</sup>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치유<sup>2</sup>와 자립<sup>3</sup>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성차별의 결과로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에 공유되고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법·제도적인 절차가 신설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겼다. 하지만 현장에서 특히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일하는 활동가로서 여전히 느껴지는 편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시설에 입소하면 내담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다’는 생각이다.

물론 피해생존자가 지속적인 피해에서 벗어나서 안전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 
- 1 이 글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를 ‘성폭력 피해생존자’(이하 ‘피해생존자’)로 쓴다. 어떤 관점을 기반으로 하느냐에 따라 ‘피해자’, ‘피해 여성’, ‘생존자’, ‘경험자’, ‘당사자’와 같이 다양하게 지칭할 수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극복하고 피해생존자의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피해생존자라는 용어를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다.
  - 2 표준대국어사전에 따르면 ‘치유’는 ‘치료하여 병을 낫게 함’이라 정의되어 있다. 심리학계에서는 ‘치유’, ‘회복’, ‘대처’, ‘생존’, ‘성장’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치유’는 생존자 문헌에서 자주 언급되는 전 생애적 과정으로서 피해생존자의 주체성이 부각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권해수, 2007). 이 글에서 사용하는 ‘치유’는 사전적 정의처럼 성폭력 피해를 병리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피해생존자가 사회 구조적 문제인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피해생존자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획득해 나가는 주체적인 경험을 가리키기 위해 치유를 사용하였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 3 이 글에서 ‘자립’은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로 쓰인다. 시설을 퇴소해서 혼자 생활을 꾸린다는 시설 기준의 자립과 생애주기의 한 단계인 자립, 스스로 경제적, 정서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인 자립 등이다.



열린터 생활인<sup>4</sup>의 대부분은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2018년 기준 전체 310명 중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는 232명으로 전체의 74.8%,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중 청소년은 184명으로 79.3%, 전체 인원 중 청소년은 228명으로 73.5%)으로 원 거주지에서 지속적인 재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친족성폭력 피해가 아니지만 가족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오히려 피해생존자를 비난하거나 원가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적절한 돌봄과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열린터에 입소하게 된다. 생활인들의 피해 유형에 대해 활동가로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은 피해로 인하여 성장에 필요한 물리적, 정서적 자원의 결핍을 겪는다는 점이다.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생존자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상가족’<sup>5</sup> 중심이기 때문이다.

생활인들은 열린터라는 새로운 생활공간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쉽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한다. 피해로부터의 쉽은 보장되지만 이때부터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난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피해생존자나 피해자 지원기관에 열린터를 ‘쉼터’보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는 명칭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쉼터’라는 명칭이 내담자와 사건지원자에게 보호시설의 역할을 의식주 제공으로 축소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 규칙 및 심리상담,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한 거부감을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이 피해생존자를 후유증을 호소하는 병리적 대상으로 한정하는 인상을 주고 ‘수용시설’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역시 적절한 명칭은 아닌 것 같다. 열린터를 어떤 명칭으로 부를지에 대한 고민은 피해생존자들에게 열린터가 어떤 지향에 따른 기능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생활인들의 피해 유형은 유사하나 성폭력 피해라는 외상에 대한 반응 양상(소위 ‘피해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라고 불리는 행동들)은 다르다. 오히려 어린 시절부터 피해와 동반하여 장기적으로 적절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 생활인들은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힘겨움을 겪는다. 피해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생활인들이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과정은 장기 과제를 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퇴소 이후에도 스스로를 돌보고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나가기 위

- 
- 4 일반적으로 시설에 입소한 사람을 가리킬 때 ‘입소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입소자라는 표현은 다소 딱딱하고 시설 중심의 용어이므로 성폭력 피해생존자 공동체라는 지향을 환기하기 위해 ‘생활인’으로 지칭하고 있다. 생활인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 5 ‘정상가족’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가족주의’로도 쓰이며 부모와 자녀, 즉 이성애 결합으로 맺어진 혈연 중심 핵가족을 보편적인 가족형태라고 가정하는 규범을 가리킨다(이재경, 2015). 이 규범은 다양한 가족 구성을 비가시화하는 동시에 정상가족과 관련된 사회구조적 문제(성역할 분리, 자원 획득의 개인화 등)를 은폐한다.

해 준비하는 의미도 포함한다.

‘성폭력은 평생 지속되는 고통을 초래한다’는 통념과 다른 의미에서 치유는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도 한다. 이 통념은 성폭력을 개인이 겪은 특수하고 비극적인 성경험으로 축소하고 회복 불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경험 역시 외상의 일종이다. 지속기간과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가 발생한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외상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2007). 권혜수(2007)의 연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치유 과정은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거나 생애주기 발달에 따라 그 과정이 반복되고 순환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다. 공춘옥·김봉환(2014)은 성폭력 피해에서 외상을 성장의 변수로 읽어낼 때 어떤 측면에서 역량이 강화되고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성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치유는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여러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피해생존자로서 인지, 역량강화하는 과정이다. 다만, 시설에 입소한(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가해자가 원 거주지에서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서 가족이라는 주요한 자원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에게 가족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일면 안전을 보장한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 것도 없이 혼자 생존해내야 한다는 박탈감이나 의지할 곳이 없다는 불안감으로 다가온다. 이는 치유와 자립이라는 과제가 장기화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치유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열림터는 피해로부터 벗어나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임시 거처이므로 생활인들은 준비된 퇴소이든, 준비되지 않은 퇴소이든 언제든 퇴소라는 변화를 경험한다. 단 며칠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짧은 입소 기간 동안 일상생활의 회복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 생활인들이 퇴소하는 경우는 다양한데 무단이나 조기 퇴소의 경우 시설 생활 부적응이 주된 이유이다. 입소하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은 기대와 달리 시설 생활 자체가 적응이 쉽지 않다. 열림터는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공간이기 때문에 규칙이 존재하고 형평성을 위해 예외를 두기 어렵다. 또한 한 해에도 여러 사람이 입퇴소를 반복하므로 낯선 사람과 계속해서 부대껴야 한다. 생활인들은 이로 인한 피로감으로 적응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때로는 피해로 인해 타인과 신뢰관계가 쉽게 형성되지 않아서 생기는 어려움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가 분리되어 원가정에 복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단이나 조기 퇴소하는 생활인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만기 퇴소하는 경우는 무단·조기 퇴소하는 사람보다는 준비를 많이 한 뒤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립을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생활을 꾸리고 유지하면서 사회초년생으로 살아가기가 생각 이상으로 녹록치 않다. ‘자



립'은 경제적 지위에 한정되지 않을뿐더러 한 번 도달하면 지속되는 결과가 아니라 생애주기의 변화와 그 당시의 상황이 맞물리는 중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상태에 가깝다.

그래서 어떻게 퇴소하는 생활인이나 활동가에게 퇴소는 지원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계기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이 발표에서는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열림터에서 퇴소자<sup>6</sup> 지원을 하게 된 계기와 그에 따른 고민 지점들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 개소 이후 지속과제인 퇴소자 지원과 이에 대한 논의들<sup>7</sup>

열림터에서 퇴소 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에서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가 아니다. 개소 시점인 1994년부터 현재까지 퇴소자 지원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다. 초기부터 2008년까지 입소 기간이 1~9개월로 일시적 피난처 기능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생활인의 치유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입소 기간 연장이 맞닿아 있는 현안이 되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2004). 2009년 상반기에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를 대상으로 입소 기간 연장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10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다 장기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퇴소자 지원을 지속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개소부터 지속해서 제공되고 있는 지원은 개별지원 중 퇴소 준비(필요시 타 기관 연계)와 퇴소 후 개별상담이다. 개별상담은 퇴소자나 대리인(보호자 혹은 열림터 활동가 외 타 기관 지원자)과 하는 일상생활상담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퇴소 후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 관계 구축을 하면서 정서적 지지감을 느끼게 하고 필요한 자원을 탐색,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열림터 상담일지는 2004년부터 상담소와 분리하여 보관하였고 이를 계기로 활동가들은 상담일지 전산화 작업을 통한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피해 특성상 퇴소와 자립을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원 가족 이외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원시설, 직업훈련 등 연계기관을 발굴하는 것도 개별지원을 위한 주요 작업에 포함되었다. 2001년에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개별지원에 보다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첫 시도로

6 이 글에서는 열림터를 퇴소한 사람을 편의상 '퇴소자'라고 지칭한다. 2019년 7월 열림터 퇴소자모임 '또우리'에서 모임 이름이자 퇴소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또우리'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나 생활인과 달리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쉽게 알기 어렵다. 하지만 임시거처로 생활한 시설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퇴소자'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 표현인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

7 인용표기를 하지 않은 내용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제1~28차 총회자료집(1991~2019)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퇴소자 전체 근황 파악 및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논의되었다. 시작 연도는 불명확하지만, 후 임금 일부를 자부담으로 하여 자립에 필요한 퇴소 물품 지원 혹은 지원금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퇴소자립지원금<sup>8</sup>은 2012년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한 퇴소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는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퇴소자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열림터 자부담으로 소정의 퇴소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개별지원은 치유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입소 시보다 매우 한정적이다.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비용이 여전히 개인이 해결해야 할 부담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소자와 활동가가 쉽게 무기력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현재 열림터 지원체계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발굴했을 때 필요한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있다.

퇴소 후 지원은 개별지원에 한정되지 않았다. 집단상담이나 자조모임과 같이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서로 지지체계를 구성하여 역량 강화 할 수 있는 공동활동이나 자립공동체 같은 집단 형태의 지원도 시도하였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1997년부터 퇴소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숙박 형태로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는 집단상담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방향을 논의하였다. 퇴소자 집단상담은 2001년까지 운영되다 이후에는 개별에 필요한 지원이 더 중심과제가 되면서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04~2007년 3년 동안은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중간집인 자립지지공동체 하담을 운영하였다. 자립지지공동체의 상이 쉽게 합의되지 않았고 관련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 반복되었지만 하담을 통해 여성주의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 된 장기주거지원공동체 모델을 제시하고 피해생존자에 대한 중장기 지원의 필요성을 촉구할 수 있었다. 2010년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열림터를 비롯한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단기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재입소를 하지 않는 한 최대 9개월까지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쉼터 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타깝게도 운영을 중단하게 되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2007;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2013년부터

8 정부에서 지원하는 퇴소자립지원금은 2012년부터 퇴소자에게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만 18세 이상의 퇴소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13년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생활한 만 18세 이상의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2017년 아동복지시설에 준하여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 즉, 만 18세 미만일 때 입소하여 1년 이상 보호시설에서 생활, 만 19세 이상인 시기에 퇴소한 사람(단, 취업이나 대학진학 등으로 조기 퇴소한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이면 지급 가능)으로 지원대상이 축소되었다. 2018년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 시기에 입소하여 1년 이상 보호시설에 생활한 사람으로 미성년에 대한 정의가 대중적인 미/성년 인식에 부합하게 변경되었다.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생존자들 대부분은 원가족과 분리되어 자립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단순히 성인인 시기에 입소했기 때문에 더 열악한 상황에서 퇴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해결과제가 남아있다.

는 집단상담이 아닌 퇴소자모임을 기획하여 진행을 시작하였다. 다만, 활동가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활인 지원이 우선되고 퇴소자 간 역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모임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입소자 수가 감소하고 신규 인력이 충원된 2019년 올해에서야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정기적인 퇴소자모임을 홀수 월마다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2001년부터 퇴소 후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자립이나 치유에 대한 중단연구가 종종 제안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유사한 활동은 20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대중서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열립터, 함께 말하다』이다. 친족성폭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기에 퇴소한 16명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시설 생활, 피해 특성, 고소 과정, 자립, 치유,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 등을 정리하였다. 좀 더 긴 호흡에서 퇴소자들의 삶을 추적하여 치유를 촉진·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퇴소자들의 자립에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퇴소자 지원과 관련한 활동은 2011년부터 총회자료집에 별도로 수치화되어 기록하다가 2015년부터는 운영일지에 생활인 지원과 같이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효과적인 퇴소자 지원을 위해 2010년에는 멘토-멘티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퇴소자들이 담당활동가 혹은 함께 생활했던 활동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컸고 활동가 변동이 잦아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2011년에는 입소 전후 생활인의 변화와 이후 지원방향을 찾아보기 위해 종결사례포럼이 도입되었다. 2013년부터는 퇴소자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원 규정안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예산안을 포함한 퇴소자 지원에 대한 운영규정이 마련되었다. 퇴소자 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방법이 구체화 될수록 퇴소자 지원 횟수는 증가 추세를 보인다.

퇴소 후 지원 활동을 종합해 보면 생활인들의 피해 특성을 고려하여 치유와 자립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되 시기에 따라 퇴소자 개별 지원과 집단상담, 자조모임, 자립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병행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자 꾀하였다. 다만, 퇴소자 지원이 활동가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고 담당 활동가나 함께 생활했던 활동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퇴소자들의 성향이 맞물려 활동가 퇴사 후에는 퇴소자들이 열립터와 거리감이 생기는 한계가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은 열립터에서 퇴소 후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칫 퇴소자 지원이 활동가 개인의 특성에 의존하거나 사적인 영역으로 남겨진다면 내담자-지원자의 평등한 관계를 마련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입소 정원과 입소자에 한정된 지원 실적이 중시되는 현행 운영 규정상 퇴소자 지원은 가시화되지 않는 활동으로 활동가에게 과외의 업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여성주의 쉼터로

서 열림터가 퇴소 후 지원에 대해 더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은 퇴소자들이 중심이 되어 열림터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장기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이다.

## 퇴소자 개별지원의 현재: 치유와 자립을 위한 자원 확보의 불/가능성

올해 열림터 퇴소자 지원 방법은 크게 퇴소자모임과 개별지원으로 나뉜다. 현재 개별지원 은 퇴소준비를 포함하여 퇴소지원금 및 퇴소물품구입비 지원이나 법적 지원, 퇴소 후 3개월 간 일시적인 심리상담비용 지원, 일상생활상담, 특별후원금<sup>9</sup>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퇴소자모임과 개별지원은 긍정적 상승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퇴소 후 지원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적절한 지원이 어려워 퇴소자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다.

퇴소자들 중 자조모임이나 일상생활상담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심리상태를 겪고 있는 경우 이들에 대한 지원이 쉽지 않다. 열림터에서 정신과 진료(약물복용)나 심리상담을 지원할 때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데 퇴소 후에는 지원기준액을 이미 초과하게 된다. 운영 지침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바라기센터나 상담소 등에서 주치의 소견, 내부회의 등을 거쳐 치료 기간 연장을 위한 의견서를 첨부한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연간 의료비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속지원이 어려워진다. 외상에 대한 반응은 단기간에 치유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용 제한을 재고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입소 당시와 비교할 때 퇴소 후에는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경제적 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것과 맞물려 자립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습지원이나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정서문화지원 역시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영역으로 치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자원도 축소된다. 이는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대해 현재 여성·청년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연관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여성 1인 가구는 취업률과 임

---

9 생활인 지원 분류상 학교·학습지원이 있지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할 만큼 운영비가 여유로운 편은 아니다. 대학생들은 보통 성적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 대부분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 가구원동의(부모/배우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 특성상 원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는 생활인이나 퇴소자들은 지원 받기 어렵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한 생활인이나 퇴소자가 있을 경우 특별후원금을 모집하여 일회적으로 등록금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금이 모두 났다.<sup>10</sup> 구인·구직사이트에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고소득이라 홍보하여 성판매로 유입하게 하는 경우도 잦다.<sup>11</sup> 여성 노동이 저평가되고 안전을 위해 여성이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변금선·김기현(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은 원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특성상 청년세대의 삶의 격차는 구조적으로 굳어진다. 이는 '정상가족' 중심의 사회문화가 열림터 생활인 및 퇴소자의 아동·청소년기 성장에 필요한 자원의 결핍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승헌·임다혜·강민아(2017)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가구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 과거 가족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정서적,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자원이 결핍된 경우 행복감이 낮았다는 분석을 하였다. 이 중 건강상태나 가구 소득수준, 사회적 지지가 원가정에서 직·간접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물리적, 정서적 자원임을 고려할 때 자원 획득의 경로를 가정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는 것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퇴소자들이 자립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으므로 여성·청년 정책 혹은 취약계층 정책과 연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열림터와 같은 지원기관에서는 개인 후원자를 연결하는 등 자구책으로 애쓰기보다는 퇴소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고 점차 스스로 자원 활용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이 필요해 보인다.

## ‘또우리’,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정기적인 자조모임의 시작

개별지원은 지금까지 해온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으나 열림터 25주년 맞이 특별사업인 퇴소자모임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작은말하기<sup>12</sup>’를 근거로 하였다. 이 모임은 성폭력 피해생존자이자 열림터 퇴소자라는 공통점이 중심이 된다. 가족 중심의 소속감이나 유대감이 주된 정서적 자원인 사회에서 퇴소자 간 친밀한 관계를 꾸려 서로 간의 관계가 지지체계가 될 수

10 “여성 1인 가구 주거환경 보고서”, 윤지연·은혜진·정혜진 기자, 참세상, 2019.10.08.

11 “여성전문 ‘고소득’ 아르바이트?...연락하니 ‘성매매 안내’”, 정다운 기자, SBS모닝와이드, 2019.10.05.

12 ‘작은말하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2007년 4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생존자 자조모임이다. 연간 행사로 진행되었던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는 다양한 말하기에 대한 욕구를 담아내거나 피해생존자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피해생존자들 간 경험의 차이나 개인의 치유를 넘어 말하기를 통해 피해를 해석하는 언어를 얻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있게 한다는 것이 작은말하기와의 별도로 모임을 꾸리는 이유가 되었다. 생활했던 시기나 현재 고민지점이 다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자립해 온 경험으로 어려운 설명 없이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2019년 퇴소자모임이 기존에 진행했던 퇴소자모임과 다른 점은 홀수 월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다음을 예상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는 것이다. 자조모임이기 때문에 퇴소자 간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모임의 주도권이 점차 퇴소자들에게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에 포함되었다. 기존의 퇴소 후 지원에서 활동가 변동이 클수록 열림터와 퇴소자 간의 관계도 약해지는 경향을 볼 때 활동가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안정적으로 모임을 지속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퇴소자모임을 기획할 때 고려했던 조건 중 하나는 퇴소자 간의 역동이었다. 2017년 생활했던 퇴소자 간의 유대감이 높고 비교적 최근에 퇴소하였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주요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참여하면 모임의 분위기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퇴소자모임을 시작하기 전, 전·현 활동가들이 모여 기획 회의를 하고 퇴소자들의 연락처를 종합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활동가와 퇴소자 간에 개별적으로 유지했던 관계를 다시 열림터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전 활동가들의 참여도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초기에는 활동가들이 퇴소자 각자에게 모임 참여를 독려했고 모임이 어느 정도 꾸러진 후에는 점차 현 활동가가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 경로를 열림터로 집중시켰다. 3~9월에 총 4회 진행되었으며 상황에 따라 간담회(3월), 고민상담(5, 7월), 열림터 생일잔치(9월)로 진행되었다. 모임 약한 달 전에는 퇴소자들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하여 모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근황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게 하였다.

모임 이름인 '또우리'는 7월 모임에서 정해진 이름으로 '또 만나요, 우리'의 줄임말이다. '또우리'는 모임 자체를 지칭하지만, 퇴소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또우리 여러분', '또우리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또우리'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제안되었는데 '또우리', '다우리'(다시 만나요, 우리), '고사리'(고사리로 시작하는 삼행시로 다음과 같은 풀이를 붙임-고기 사육자 우리; 고기를 사랑하는 우리; 고구마 사리 추가요; 고민을 나누는 사이 리멤버 포에버), '세미나'(쌔이 날 정도로 친한 우리들), '떠나간 자들', '다시 만난 모임', '마지막 시스템'과 같은 이름은 '우리'나 '다시 만나' 서로의 관계 혹은 열림터를 퇴소했다는 공통점을 부각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열사람'(열림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모임; 열림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지붕이야기'는 열림터라는 공간이 강조된 경우, '아모르파티'(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라!), '신여성회'(신여성의 모임), '우먼파워'는 역량강화를 모임의 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이다. 몇몇 장난스러운 이름도 있지만, 참여자들을 ‘우리’로 지칭하며 소속감 혹은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는 명칭이나 설명이 자주 등장하였다.

고민상담을 진행했던 두 회기는 자조모임으로서 기능에 충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시기에 생활했던 4~5인이 한 조가 되어 조별로 서로의 근황과 현재의 고민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고민상담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퇴소 후 개별상담에서 ‘열린터에서 살 때는 너무 시끄럽고 피곤하다고 생각했는데 퇴소하고 나니 집에 와서 오늘 있었던 힘든 일을 이야기하려면 굳이 누군가를 찾아야 한다’는 고충에서 착안하였다. 모임에서 나는 고민의 내용으로는 직장 생활(구직)의 어려움이나 주거의 불안, 원가족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혼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겪는 곤란함,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이 있었다. 이러한 고민들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설에 입소한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피해 특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치유가 ‘성폭력 피해’라는 단일한 조건만으로 구성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생애주기가 변함에 따라 여러 조건과 결합하여 치유의 과제가 달라지고 있고 퇴소 당시에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이나 자원이 모두 갖춰질 수 없다는 점은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또한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모임 혹은 열린터에 제안하는 바는 아래와 같이 ‘가족’ 같은 공간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다.

“추석, 설날에 할일 없는 사람들 모여서 다같이 밥먹어요 연휴에 갈 곳이 있길 바래요”

“(전략) 왠지 집으로 돌아온 느낌이에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온 그런 느낌”

- 5월 퇴소자모임에 대한 평가중

“오늘 여러 명의 열린터 식구들과 만나서 너무 반값고 친정처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편안함을 주었어요(후략)”

- 7월 퇴소자모임에 대한 평가중

“친정집”

“돌아올 수 있는 곳”

“무너질 때 보호해주는 곳”

“조건없는 사랑”

“가족, 집, 명절 같은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곳. 뭔가 그림고 고마운 곳”

- 9월 생일잔치 포스트잇 작업 ‘나에게 열린터란?’에 대한 응답중

‘정상가족’ 중심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안전하고 의지가 되며 생애에 필요한 대부분이 집  
 약된 공간으로 상상된다. 퇴소자들이 열림터에 오기 전 피해가 은폐된 이유는 퇴소 후에도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배경을 주변인들에게 설명하지 못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  
 와 동일하다. 그래서 열림터에 기대하는 바는 실제 ‘가족’처럼 기능해 달라는 의미 외에도 ‘가  
 족’의 역할을 하는 대안적인 관계나 공간이 필요로 하다는 바를 읽어낼 수 있다. 모임의 이름  
 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우리’가 자주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가족’으로 상상되는 바람의 내용은 퇴소자들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로움을 겪고 있  
 는가를 보여준다. 이는 개별지원에서 쉽게 드러내거나 해소할 수 없는 정서적이자 사회구조  
 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다. “회사-집을 반복”하던 일상에서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누군가와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에서 느끼는 “편안  
 함”과 같이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모임 후기에 “힘을 얻고 간다”는 언급이 많  
 이 등장하는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 “돌아올 수 있는 곳”, “무너질 때 보호”, “조건없는 사랑”  
 은 홀로 자립해야 한다는 불안함과 의지할 곳의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에서 민아가 자신을 지원해 줄 가족이 없기 때문에 “실패할 권리가 없다”고 표현하고 혼자서  
 자기 생계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위기감을 토로한 것과 유사하다. 같은 책에서 승자는  
 퇴소 이후에는 “그냥 뭘 하든 내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고 멘토가 없는 상황의 쓸쓸함을 이  
 야기했다. ‘집’이나 ‘돌아온’다는 표현에서 소속감은 왜 ‘정상가족’이 아닌 관계나 공간에서는  
 느끼거나 지속하기 어려우나라는 고민을 하게 한다.

아직 퇴소자모임의 역할을 퇴소자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거시적으로 읽어내기에는 어려운  
 단계이지만 이 모임의 소소한 효과는 확인할 수 있었다. 퇴소 준비 단계에서 퇴소자모임을  
 안내하면서 열림터와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었다. 퇴소 후에는 모임에 대한 안내를 주고받거나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관계 유지  
 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퇴소자의 필요에 의해서 아는 전·현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  
 청하는 등 특별한 계기를 중심으로 연락을 했기 때문에 종종 퇴소자들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다’며 활동가들에게 미안해하였다. 현재는 정기적인 모임에서 일상 공유를 하면서 자연  
 스럽게 고민을 토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발굴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개별적으로 만나서 진  
 행하던 일상생활상담도 모임에서 소화되는 부분이 있어 활동가로서는 업무 부담이 일정 부  
 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모임에 한 번 참석한 사람들이 추후 모임에도 대부분 참석하고 있  
 어 회차가 거듭될수록 서로 친밀감이 높아지고 모임이 없을 때 자체적으로 모임을 하기도 해  
 점차 퇴소자 중심의 모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제언 : 시설에 입소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에 대한 후속 지원 보장

현재 열림터에서는 생활인 지원활동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상담 및 생활지원을 포함하여 8개의 항목으로, 퇴소자 지원의 경우 1개의 항목으로 포괄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요청에 따라 실적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 시 퇴소자 지원은 ‘기타’로 다시 분류되어 생활인 지원과 구분되지 않고 있다. 운영비도 생활인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과 같은 자부담 예산이 여유롭지 않을 때는 그 필요성을 인지하더라도 퇴소자 지원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퇴소자에 대한 정부 보조는 2012년에서야 비로소 지원되기 시작했고 아직도 운영지침에 퇴소 후 지원에 대한 항목이 신설되지 않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 피해생존자의 자립은 중요한 이슈가 아니거나 치유를 단기간의 자원 투입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운영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퇴소 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더 많다. 현재까지 운영지침이 입소자 중심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면 향후 과제는 퇴소 후 연속적인 지원이 담보될 수 있느냐의 지점에 닿아 있을 것이다.

또한 원가정의 지원 없이 별도로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조건에서 열림터와 유사한 성격의 시설은 보건복지부 소속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이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사람들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자립정착금을 비롯하여 대학 입학금,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등 여러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다.<sup>13</sup> 올해 4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자립수당이 지원되고 있다.<sup>14</sup>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관은 2001년부터 개소하여 현재 전국 13개가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금이 2012년에서야 지원되었고 자립지원관은 2014년에 개소하여 현재 2개소가 운영 중인 상황을 볼 때 아동복지시설과 비교해 자립이 고려되기 시작한 시거나 지원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최근 논의 중 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외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및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sup>15</sup> 지원이 필요한 상황의 공통점을 볼 때 어느 부처에서 어떤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느냐 보

13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www.ncrc.or.kr/>)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14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자립수당 월 30만원 첫 지급”, 이혜인 기자, 경향신문, 2019.04.18.

15 “광주 0원, 울산 500만원…시설 퇴소 청소년 지원금 천차만별, 왜?”, 오연서 기자, 한겨레신문, 2019.4.23.

다 지원내용의 형평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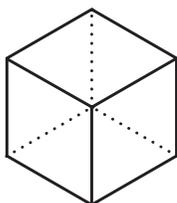
더불어 열림터에서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를 위한 지속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면서 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생존자에 대한 중단연구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오랜 시간 피해생존자를 지원했지만, 치유와 자립에 어떤 변수가 영향을 끼치는지 명확하게 알아내지 못하였다. 치유를 보조하거나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지원의 성과나 공백은 무엇인지, 입소 당시만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입소 전·후 상황을 모두 고려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지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당사자의 관점에서 피해 경험, 열림터 생활, 퇴소 이후 등의 의미와 과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포함한다면 피해생존자로서 치유와 자립에 대한 자기 언어를 계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춘옥·김봉환(2014),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성장(thriving)’ 경험의 의미”,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Vol.19 No.4.
- 권김현영 외(2011), 『성폭력 뒤집기—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엮음, 서울: 이매진.
- 권해수(2007), 성폭력 피해 여성의 치유 경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Vol.13 No.4.
- 김지현 외(2014),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친족성폭력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기획, 서울: 이매진.
- 변금선·김기현(2019), 청년층의 삶의 질 격차에 관한 연구: 1988-1998년생 청년의 다중격차 실태 분석, 『사회복지정책』, Vol.46 No.2.
- 여성가족부(2012~2019), 『2012~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이재경(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가족-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제29집.
- 한국성폭력상담소(1991~2019), 『한국성폭력상담소 제1~28차 정기총회자료집』.
- \_\_\_\_\_ (1995), 『내일을 여는 열림터』.
- \_\_\_\_\_ (2007),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3년 돌아보기』.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2007),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2004),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피해 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열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10.06.
- 한승한·임다혜·강민아(2017), “한국 청년의 삶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행복: 불확실성과 통제권한 부재의 매개효과”,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2호.





# 토론

토론 1. 송은주(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퉁잇돌' 원장)

토론 2. 난다(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 곁에서 동행하는 '몽실' 프로젝트팀)

토론 3. 인정숙(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토론 1.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퇴소자 지원 네트워크와 그 필요

송은주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청주교구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폭력피해자보호시설  
'모통잇돌' 원장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에도 위협에 노출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체계적인 퇴소자 지원 네트워크의 구축과 그 필요성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한다.

### 1. 퇴소 이후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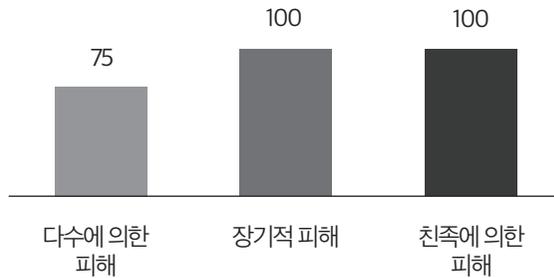
#### 1) 퇴소 후 갈 곳 없는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현실

무너진 원가정

장애인 성폭력 피해 유형의 3가지 특징은 살펴보면

1. 다수에 의한 피해(입주자의 75%)
2. 장기적 피해(입주자의 100%)
3. 친족 및 지역사회 주변인에 의한 피해(입주자의 100%)

특히, 현재 모퉁잇돌 입주자의 70%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이고 나머지 30%도 이웃 주민 등 얼굴을 익히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한 피해로, 100% 모두 평소에 인사를 하며 지냈던 지인들에 의한 폭력이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실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이 쉼터(보호시설)에서 지내며 피해의 트라우마를 일정 부분 치유해 낸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돌아갈 곳은 아무데도 없는 것이 냉정하지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시설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일정 기간에만 얽매어 퇴소를 추진한다면 이들이 퇴소하여 겪어야 할 일들은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 것 또한 명확한 사실이다.



##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부족

시·도별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생활 시설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장애인 보호시설	-	1	-	-	1	1	-	-	1	-	1	1	-	1	-	-	1	8
장애인 성폭력피해 자립지원공동생활 시설		(1) 예정									1							1

(단위:개소)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전국적으로 보호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특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 상황은 더욱 열악하며 나아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에서 장기간

살다가 퇴소를 해야 하는 이들을 위한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공동 생활시설은 전국에 단 하나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이 이루어진 원가정이나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 2차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경찰청의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및 동종 범죄 재범 건수 자료를 보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센터의 부재

2019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1호가 개원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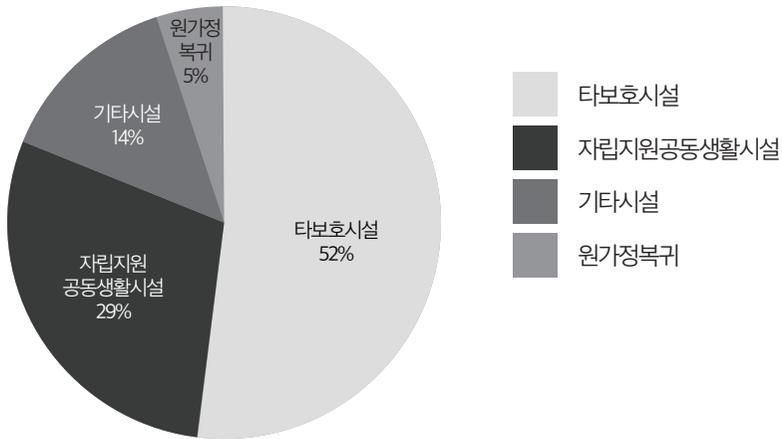
장애인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의 입주기간에 제한(최소2년 최장4년)이 있다. 입주기간 만료 후 돌아갈 곳이 없는 피해자는 성폭력의 위협에 다시 노출되고 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자립생활 공간이 필요하고,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립을 지원해 줄 자립지원센터가 절실하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특수성이라 함은 첫째, 가해자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장애로 인하여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가해자는 출소 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둘째,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일시적인 치료로 치유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치유회복과정이 필요하다.

## 2.쉼터 밖 성폭력 피해 생존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 1) 보호시설 퇴소 후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현실

- 95% - 타시설입소(보호시설52%,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29%, 기타14%)
- 5% - 원가정 복귀



입소자들의 퇴소 후 탈시설이 지향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평생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는 없는 단순 이유. 둘째,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 등에서 기인하는 시설의 한계 (입주자의 자유권 제한)를 들 수 있다.

탈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퇴소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구축 및 지원 확대가 이루어질 때, 지역 사회 안에서 장애인 인권이 존중되는 탈시설을 이룰 수 있다.

## 2) 필요한 지원 - 가칭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 설립

### (1) 자립지원센터의 역할

#### 입주자 지원 업무

##### ① 입주자 특성에 따른 개별 지원

- 행정 자립 지원(주민센터 업무, 주택관련 업무-관리비, 임대차 계약, 임대료 등)
- 재정 자립 지원(통장 관리, 가계부 관리, 개인 자산 관리 등)
- 생활 자립 지원(식자재 구입 및 관리, 생활용품 구입 및 관리, 생활 안전 관리)
- 정서 자립 지원(주기적인 상담 및 병원 진료 지원, 지역 사회 안에서 문화생활 지원)

##### ②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와의 교류

지역주민의 이해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2) 자립지원센터의 지원체계

- ① 공공주택 확보, 주택임대의 필요비용 지원 등의 구체적 주거 지원 대책
- ②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필요한 주거 서비스 및 다양한 자립 생활 서비스 제공
- ③ 자립 지원 주택 입주 후 사례관리자 배치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 유지
- ④ 사례 관리자의 기능과 역할
  - 입주자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입주자 관리, 주택 관리, 행정 업무, 지역사회네트워크 등의 업무 실시
- ⑤ 입주자 지원 업무
  - 입주자에 대한 개별자립계획 수립
    - 지원영역, 지원목표, 지원내용 등 매뉴얼 마련
    - 입주 전 지원, 생활 지원, 퇴거 지원, 사후지원 체계 마련
  - 개별자립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
    - 입주자의 행정적 자립 지원, 입주자 자립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 입주자의 행정적 자립지원을 위해 주민센터 관련 지원, 관공서, 주택관련 지원 추진
    - 입주자 자립지원을 위한 입주 초기 입주자 지원, 입주자 자립계획 및 지원절차 등 계획 수립
  - 입주자의 생활 관리
  - 입주자 상담
  - 입주자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 입주자에 대한 기타 업무
- ⑥ 지역사회 네트워크
  - 지역사회와의 교류
  - 지역주민의 이해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활용
- ⑦ 행정업무
  - 업무 보고, 실적관리, 정산보고 등
  -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기타 행정 업무

### ⑧주택관리업무

- 주택하자보수, 비품관리, 임대인 계약관리
-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관리, 화재보험갱신

### ⑨안전관리업무

- 자립생활 소방계획 수립 등 소방안전, 위기·긴급 상황 시 대응 관련 매뉴얼 지침 마련
- 소방안전관리자의 필요 업무 파악 및 점검

올해 모퉁잇들은 10살이 되었다. 내가 이들과 함께 살아 온 10년은 어느 시인의 말처럼 은총의 돌층계를 올라가는 일이었다. 어느 순간 하나 감사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또 어느 순간 하나 눈물 맺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

열심히 가르치고 키워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주고 응원 속에 내 보낸 아이가 보름 만에 모아준 돈을 사기로 모두 날리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새벽에 인천까지 달려가 함께 끌어안고 통곡하다 데리고 내려온 아이, 입소한지 일 년 만에 소뇌암이라는 희귀병 발병으로 8시간에 걸친 대수술과 3개월간의 입원 끝에 완치는 되지 않았지만 퇴원하여 지금까지 추적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 급작스럽게 몸의 이상 증후가 나타나 큰 병원을 전전한 끝에 찾아낸 병 루푸스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3주간 생사를 오가며 지내는 아이를 직원들과 2교대 근무를 하며 살려낸 기적의 아이. 친부의 성폭행과 학대에 의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손톱을 물어뜯어 뿌리만 남은 채 우리 집에 왔는데 매일 매일 함께 손톱을 관찰하고 얼마나 자랐는지 기록하며 관리하여 처음으로 길어진 손톱을 자르던 날 함께 눈시울을 붉힌 아이.

10년의 시간 동안 경박해지는 것이 두려워 말로 풀어내기도, 영혼 없는 퍼짐이 될까 걱정되어 글로 풀어내기 힘든 아이들과의 많은 이야기가 아직 은총의 돌층계가 되어 내 앞에 펼쳐져 있다. 나는 돌층계 하나하나가 두렵지 않고 그저 이들과 함께 가는 그 길 어디에서나 감사와 사랑을 찾을 뿐이다.

다만 하나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성장하여 꾸린 가정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으며, 신변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 받기를 기원한다.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장애인 성폭력 자립지원센터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생존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각자의 삶을堂堂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홀로 서기’가 아니라 ‘의존하며 함께 살기’를 바란다

지원 담론의 패러다임 전환과 대안적 자립 개념을 말하다

난다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 곁에서 동행하는 ‘몽실’ 프로젝트팀

인권교육센터 ‘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그 동안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해온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자신을 억압해온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동시에 현실을 변화시켜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단체이다. 2008년 2월, 인권교육의 원칙을 버리면서 풍성한 실천을 일구어내기 위해 인권교육활동가들이 모여 창립하였다. ‘들’은 인권교육이 인권교육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실천하며, 인권교육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인권교육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들’이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는 활동 중 하나는 바로 청소년인권운동이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춧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등에 참여하면서 학생인권을 비롯한 청소년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하며,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열악한 청소년운동의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들’은 다양한 위치의 청소년과 그들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각각의 청소년들이 각자의 삶의 서사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인권의 언어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들’은 지난 2015년부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자몽’ 사업에 참여해왔다. ‘자몽’은 청소년자립을 지원하는 현장의 다양한 시도들을 북돋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이며 ‘들’은 모니터링 기관으로 함께 하고 있다. ‘자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몽실’이라는 이름으로 5년째 함께하고 있다. 몽실팀은 ‘자몽’의 곁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

하는 기관이나 모임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견하는 어려움을 함께 헤아리고, 새로운 출구를 찾는데 힘을 보태는 동행하고자 했다. 또한 형식적인 평가나, 현장과 멀리 떨어진 검사 또는 감시처럼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며 모니터링의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몽’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만나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자극이 되며, 청소년인권과 자립에 대한 더욱 풍부한 상상이 꽃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자몽사업을 통해 연구, 모니터링, 교육 등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자몽 사업에 함께한 첫 해인 2015년에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당시 연구를 통해 담고자 했던 기존의 자립 지원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 및 청소년 자립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나누고자 한다.

## “그런 자립은 없다”고 말하는 이유

나는 처음부터 자몽 사업 및 몽실팀에 참여한 멤버는 아니다. 2017년 말, 몽실팀 활동을 하고 있던 ‘틀’ 활동가에게 제안을 받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함께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처음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에 가까웠다. 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 당시에는 “나도 ‘자립’을 못했는데, 자립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흔히 ‘자립’이라고 하면 스스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떠올리곤 한다. 비슷한 의미로 자립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사는 것’이다. 이 뜻에 비추보자면 내 삶은 ‘자립’의 상태와 거리가 멀었다. 원가정에서 벗어나 따로 살고 있다는 점에서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독립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아니었기 때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기존 사회의 통념이 담긴 자립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음에도 ‘의존’은 마치 불완전한 인간의 징표처럼 여겨진다. ‘의존’은 모든 인간의 당연한 속성임에도 현실에서 ‘의존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는 노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뿌리를 둔다.<sup>1</sup> 여기에서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팔리는 노동력’을 의미하므로 가사 노동 및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른 역량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효과도 낳는다. 이러한 통념은 의존을 극복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게 하며, 의존하는 모습이 특정 집단만이 가지는 특성이라는 착각마저 일으킨다. 예를 들어 ‘비청소년-남성-가부장’은 빨래를 할 줄 모르거나 스스로 밥을 짓지 못하더라

1 인권교육센터 틀(2016), 『“청소년 자립” 밖에서 자립 찾기』 자몽 연구 결과 발표.

도 자립 여부를 의심 받는 일이 거의 없지만, 청소년이나 장애인 등 지원/보호/돌봄의 대상으로 불리는 존재들의 경우 ‘자립 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자립 능력 척도’ 등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강력한 사회로 인해 생기는 문제도 있다. 특정 나이에 따라 주어진 과업이 있다는 믿음이 있고 정해진 주기에서 벗어난 삶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자립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도 커지기 마련이다. 10대는 학생, 20대는 대학생, 30대는 취업 혹은 결혼, 40대는 직장인 혹은 가장, 50대에는 은퇴 준비, 60대는 노후 준비 등...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생애주기에서 벗어나는 삶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 일하지 않는/못하는 사람,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 등 즉 ‘정해진 자리’에 위치하지 않는 존재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등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은 정당한 것일까. ‘위기 청소년’이라는 말은 청소년이 놓인 ‘위기 상황’을 문제시하기보다 청소년의 존재 자체를 비정상화, 우범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sup>2</sup> 무엇을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지원의 방향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기존의 자립 개념과 지원 사업들의 방향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 여섯 가지 대안적 자립 개념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돌봄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삶이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과 돌봄을 주고받으며 그것들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더 가깝다.<sup>3</sup> 그러나 현재 청소년 자립에 관한 담론에서는 이러한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자립과 관련한 담론, 정책, 현장 실천 역시 청소년을 주체가 아닌 ‘자립시켜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자립이라는 말은 청소년에게 두려움, 홀로 내팽개쳐진 듯한 외로움이 되곤 한다. 마치 처음 봉사팀 활동을 제안받았을 때 내가 느낀 두려움과 맞닿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홀로 자립할 수는 없다. ‘스스로 그리고 함께’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바로 지금’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자립이라고 불려야 하는 건 아닐까. ‘홀

---

2 인권교육센터 들(2018), 『그런 자립은 없다 - 결을 잇고 나로 서는 청소년 현장 이야기』.

3 이은지(2017), 『L과 젠더 1차 포럼 “탈시설: 통제적 돌봄이 아닌, 잘 의존하는 삶”』,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로 살아남아 너의 쓸모를 증명하라’는 요구 앞에서 ‘의무’가 된 자립의 언어를 ‘권리’의 언어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고민의 여정이 ‘청소년의 자립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과 ‘청소년 자립, ‘기술’에서 ‘역량’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량 접근’이라는 연구 결과물에 담겼다.

유동하는 자립, 조건 없는 자립, 지금 현재의 자립, 지속 가능한 자립, 관계적 자립, 주체적 자립. 몽실팀이 만들어 낸 이 6개의 대안적 자립 개념은 기존의 자립 개념이 지닌 공백 또는 한계가 청소년의 ‘진짜 삶’과 인간 존엄의 가치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짚어 보며 그려 낸 대안적 시선이다. 삶을 불안정으로 내모는 사회에서 삶터도, 경제력도, 신분도 불안정한 청소년에게는 더더욱 유동적인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은 ‘유동하는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었다. 사회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만 ‘비정상’, ‘결핍’, ‘문제’라는 낙인을 찍어 고치라 하는 일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하는 분노는 ‘조건 없는 자립’이라는 개념을 낳았다. 청소년기를 다만 자립을 준비하는 단계로만 설정하는 일은 인간의 시간을 고정적이고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일이라는 깨달음은 ‘지금 현재의 자립’이라는 개념을 요청했다. 정해진 시기 동안 정해진 척도에 따라 정해진 과업을 완수하라 내모는 자립은 모퉁이에서 쉬어 가기도 하면서 근력을 키워 나가는 ‘지속 가능한 자립’이라는 언어로 바뀌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형성하고 관계 속에서 삶을 새로 짓기도 한다는 깨달음은 서로 의지하며 삶을 꾸려나가는 ‘관계적 자립’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힘들어도 선택해 보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잡아 나가는 경험이야말로 굴곡은 있지만 ‘색깔 있는 삶’을 가능케 한다는 발견은 ‘주체적 자립’이라는 개념을 영글게 했다.<sup>4</sup>

## 새로운 시도가 만드는 변화의 바람

2019년에는 ‘자몽 사업’을 통해 만난 청소년 지원 현장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자 『그런 자립은 없다』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그런 자립은 없다』에는 거주 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자활 훈련 매장, 대안학교, 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이 등장한다. 기관마다 특색이 있고, 비슷한 기관이더라도 사업이 기획된 맥락에 따라, 어떤 기관에는 있고 어떤 기관에는 없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듯 보였던 사업들이 닮아있다는 점도 느낄 수 있다.

원래 기획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을 바꾸는 기관도 있고,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4 인권교육센터 들(2019), 『그런 자립은 없다 - 곁을 잇고 나로 서는 청소년 현장 이야기』, 교육공동체 벗.

위해 ‘별 것도 아닌 걸 자꾸 묻는’ 교사도 있다. 일명 ‘도전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따지지 않고 진행 과정에서 일어난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을 주목하기도 한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일처럼 찾아가고 움직이고 끝까지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활동가들도 있다. 불안함을 함께 견디면서 덜 외로운 삶을 함께 살아보자며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일을 사업으로 진행한 기관도 있다.

이 기관들의 공통점은 청소년의 ‘위’나 ‘앞’에 서기보다는 동료로서 ‘곁’에 서기를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관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이다. 문제를 ‘청소년’이 아닌 ‘위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건 뻔한 이야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잊기 쉬운 이 기준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닮아있다.<sup>5</sup>

“이 순간에도 거리에서 버티며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과 제도 안에서 청소년들은 또 다른 버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목소리들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청소년들은 20살이 되면 자립을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가정으로도 어디로도 돌아갈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 주거, 일자리 등의 정책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목소리로 문제를 말해야 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 청소년 인권을 말하는 것, 청소년의 정당한 목소리와 사회적 지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청소년 자립지원현장의 고단함을 더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인권에 기반한 자립지원정책은 청소년과 동료 시민으로 일하고자 하는 비청소년 활동가들의 존엄한 노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sup>6</sup>

2018년 4월, 국회 앞에서는 조금 특별한 기자회견문이 발표되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되고 있었다. 자몽 사업을 통해 만난 기관들과 몽실탐이 청소년 참정권을 지지하고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참정권 및 선거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입장과 청소년의 등을 떠밀 듯, 의무처럼 자립을 요구하는 기존의 사회적 통념이 연결되는 점을 찾았다.

청소년인권이 더 넓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나이와 생애주기로 인한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저항하자는 주장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조금씩 미성숙한 면이 있음에도 미성숙함을 부정하며 미성숙을 근거로 권리를 제한하는 세상은, 청소년에게도 억압이지만 ‘어른들’에게도 힘든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인권의 관점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기존의 자립 정책과 담론의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5 인권교육센터 들(2019), 『그런 자립은 없다 - 곁을 잇고 나로 서는 청소년 현장 이야기』, 교육공동체 벚.

6 청소년 참정권을 지지하는 청소년지원현장 활동가 기자회견문(2018.04.25.), “선거연령 하향, 청소년의 자립과 존엄의 기본이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립 지원도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서게 할 것인가, 혹은 스스로 설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특정 집단에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자립 지원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지원이 필요한 존재에게 '홀로 서기'를 강조하며, 쉼터 등 시설에서 생활하던 이들이 어느 날 기존의 관계망과 공간에서 뚝 떨어져 나와야 할 것을 요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고민한다면, 개개인들의 능력에 점수를 매기고,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 어느 단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국에는 각자도생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배제 없는 복지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자립 평가 척도의 수정/폐지 등 당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새롭게 만들라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세상이 말하는 자립의 개념을 고쳐 쓰자. 홀로 서기가 아닌 함께 의존하는 삶을 꿈꾸자. 앞으로의 길을 고민하며 현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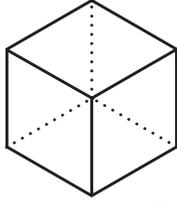


토론 3.



인정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 부록

부록 1. 열림터 연혁

부록 2. 열림터가 발간한 자료집과 단행본

부록 3. 그동안 열림터와 함께 한 사람들

부록 4. 열림터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 열림터 연혁

- 1994.09.14.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개소
- 1995.01.23.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열림터 허가(서초구청)
- 1995.10.24.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내일을 여는 열림터> 개최
- 1999.09.14. 개소 5주년 기념 세미나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개최
- 1999.09.14. 열림터 도곡동으로 이전
- 2000.04~1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사업” 주관  
성폭력에 관한 수사경찰·의료진·상담원 및 시설종사자 워크숍 진행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수사·진료 매뉴얼 발간 배포
- 2001.04~1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 사업” 주관  
성폭력에 관한 경찰교육 및 간호사 워크숍 진행  
통합적 지원을 위한 연계망 구축 간담회 개최
- 2002.03.31. 열림터 합정동으로 확장 이전
- 2003.01.01. 열림터, 별도의 부설기관으로 등록
- 2004.03.16.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개소 및 열림식 진행
- 2004.10.06.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보호시설 입소 성폭력피해생존자 지원현황과 과제> 개최

## 열림터 연혁

- 2004.10.22-23. <통합과 치유를 위한 친족성폭력 지원 상담자 WORKSHOP> 진행
- 2007.04.05.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해소 및 <하담 3년 돌아보기 및 이관식> 진행
- 2012.04.28.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활동기금마련 일일호프 <열림터를 부탁해> 진행
- 2013.03.28.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저자 북토크
- 2014.10.16. 개소 20주년 기념식 <열림터, 스무 해를 열다> 진행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 친족 성폭력 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하다』 발간
- 2019.10.30. 개소 25주년 기념 포럼 <열림터 25주년 :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개최  
열림터 25주년 후원의 밤 <우리들의 집을 찾아서> 진행





## 열림터가 발간한 자료집과 단행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1995), 「내일을 여는 열림터」, 한국  
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설 1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5.10.24.

\_\_\_\_\_ (1999),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성폭력상담소 열림터 개소 5  
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1999.09.14.

\_\_\_\_\_ (2001), 「통합적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침 대일을  
여는 쉽터」, 2001.11.

\_\_\_\_\_ (2004), 「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열림터 개소 10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004.10.06.

\_\_\_\_\_ (2007), 「친족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나침반을 찾아라!」, 2007.12.

한국성폭력상담소 ·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_\_\_\_\_ (2004), 「통합과 치유를 향한 친족성폭력 지원 상담자 WORKSHOP」,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사업 워크숍 자료집,  
2004.10.22.-23.

한국성폭력상담소(2007), 「자립지지공동체 ‘하담 3년 돌아보기」, 2007.04.05.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열림터 기획, 김지현 · 김효진 · 이미경 · 이소은 · 이어진 · 정정희  
(2014), 『우리들의 삶은 동사다 - 친족 성폭력 생존자와 열림터, 함께 말하  
다』, 이매진.



## 그동안 열림터와 함께 한 사람들

### 열림터와 함께 한 활동가들

권은정, 김미영, 김병숙, 김연정, 김영서, 김영순, 김윤희, 김지현, 김효진,  
김희정, 류수민, 문숙영, 백선희, 백정선, 서정혜, 서지숙, 송미현, 송은희,  
안효선, 양윤희, 오정희, 오희옥, 유성혜, 유자인, 이미경, 이상미, 이소진,  
이어진, 이향심, 이효숙, 임수경, 장영복, 장윤경, 장진, 전길선, 전순유,  
전혜영, 정유순, 정정희, 조은희, 조중신, 조혜옥, 허복옥, 현혜순, 홍보연  
(가나다순)

### 열림터와 함께 한 이사회 및 운영위원들

강기원, 김삼화, 김성천, 김의창, 김차연, 김혜정, 나혜진, 문숙영, 문해란, 박금자,  
박부진, 박찬운, 방기연, 배삼희, 배순희, 배정철, 백미순, 변혜정, 송미현, 양경희,  
윤장순, 이경환, 이명숙, 이미경, 이백수, 이상엽, 이승윤, 이어진, 이유희, 이윤상,  
이은미, 이종걸, 이지선, 장철우, 정대성, 정정희, 조영황, 조중신, 조형, 채송희,  
최규현, 최보원, 최영애, 최은순, 추애주, 표창원, 한석구, 홍순기  
(가나다순)



## 열림터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강명숙, 강미경, 강유리, 강제득, 강지이, 고운별, 고진, 고화정, 고희정, 곽선하,  
권민혁, 권은숙, 금보경,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광수, 김금선, 김대근, 김도홍,  
김도희, 김동래, 김문주, 김미란, 김미진, 김미향, 김민경, 김민미, 김민승, 김봉섭,  
김성준, 김소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정, 김수진, 김승일, 김신아, 김아리, 김엘림,  
김연순, 김연정, 김영교, 김영순, 김영지, 김요한, 김유숙, 김유정, 김윤희, 김은희,  
김인철, 김주연, 김지국, 김지윤, 김지현, 김지혜, 김차연, 김춘경, 김태연, 김해나,  
김현숙, 김현철, 김혜연, 김혜연, 김혜진, 김효주, 김효진, 김효진, 김희정, 김희창,  
나경미, 나유미, 남성희, 남영미, 노길옥, 노하연, 노희지, 류수민, 류종현, 마경민,  
문길환, 문숙영, 미씨유럽, 민슬기, 박경옥, 박계나, 박명숙, 박명식, 박미정,  
박상희, 박섭형, 박아름, 박연숙, 박영례, 박영익, 박은경, 박인필, 박정숙, 박정옥,  
박준숙, 박지선, 박현희, 박효정, 박희연, 박희주, 배동란, 배정원, 백미순, 백용민,  
서범원, 서복련, 서윤숙, 서정희, 서주혜, 서진희, 서해인, 서화숙, 설유진, 성주희,  
소롭티미스트 서초클럽, 손동희, 송미현, 송외숙, 송호균, 신겸우, 신경혜,  
신용변, 신자향, 심진섭, 심현실, 안문환, 안분순, 안재희, 안하영, 안효선, 안효진,  
안흥례, 안흥자, 양미초, 양윤희, 양주애, 엄다희, 엄명덕, 오경은, 오두환, 오미근,  
오선호, 오송환,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유미란, 유선옥, 유선원, 유예니,  
유예리, 유용석, 유진영, 유혜숙, 유향순, 윤수연, 윤승의, 윤종관, 윤종옥, 이경미,  
이경선, 이경아, 이계형, 이규연, 이금란, 이다윤, 이명철, 이명희, 이미자, 이미홍,  
이민휘, 이병주, 이보라, 이보운, 이상구, 이상규, 이상연, 이선영, 이성실, 이성아,  
이수연, 이수정, 이수정, 이승민, 이승선, 이신율, 이어진, 이영희, 이예담, 이예지,  
이옥영, 이원경, 이유진, 이은정, 이재현, 이정봉, 이정숙, 이정화, 이종국, 이종근,  
이주란, 이주섭, 이지연, 이지혜, 이진영, 이진향, 이찬희, 이충주, 이쾌희, 이태복,  
이향심, 이향화, 이형찬, 이호중, 이효섭, 이희경, 임명순, 임수연, 임승환, 임유영,

## 엘림터를 정기적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임치선, 임치순, 장경춘, 장다혜, 장명환, 장미소, 장종순, 장희진, 전순연, 전순유,  
전승기, 전해영, 전호완, 정명중, 정민석, 정선희, 정설희, 정순옥, 정순희, 정은경,  
정은희, 정재철, 정정희, 정정희, 정지승, 정창수, 정현주, 정현주, 조경애, 조경진,  
조민정, 조성은, 조성혜,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중신, 국제존타32지구 ZISVAW 위원회,  
조현아, 조혜리, 주혜명, 주혜정, 진수희, 진태란, 채송희, 채희영, 최가람, 최강현,  
최규영, 최명숙, 최서림, 최세은, 최연수, 최윤미, 최정림, 최정은, 최정임, 최정희,  
추주형, 토란어린이집,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표아림, 하동호,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 한국야마자키마작(주), 한석구, 한승희, 한양희,  
한영규, 한전부녀회,       한정은, 한진희, 한희숙, 허경현, 허복옥, 허정연, 허정은,  
허정익, 허제량, 홍난영, 홍윤기, 황동하, 황상하, 황선권, 황유나, 황은순, 황주영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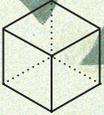
성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열림터 25주년 기념 포럼

보호의  
쉼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

발 행 일 2019년 10월 30일  
발 행 처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발 행 인 정정희  
편 집 류수민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합정동 366-24), 2층 (우)04072  
전 화 02-338-3562  
홈 페이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메 일 [yeolim94@hanmail.net](mailto:yeolim94@hanmail.net)  
표지일러스트 [김도이\(gogumaboy1995@gmail.com\)](mailto:gogumaboy1995@gmail.com)  
디 자 인 [아리에뜨\(ariettebebe@naver.com\)](mailto:ariettebebe@naver.com)



열린터 25주년 기념 포럼

보호의  
심터에서  
삶의 기반을  
만드는  
공간으로